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세균 (기획재정부 등 00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법령명	현행	개정안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계출하다	신고하다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ざんだか)	잔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음용수(飮用水, いんようすい)	먹는물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행	개정안
5·18유공자법 시행령* 등	장관골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	유자망(유동성그물)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행	개정안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어업신고필증”을 “어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어업신고필증”을 “어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조(「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건설노임단가”를 각각 “건설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3의 1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제6호 및 제8호 중 “기능이 전폐된”을 각각 “기능을 모두 잃은”으로 하고, 같은 표 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기능이 전폐된”을 “기능을 모두 잃은”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종신동안”을 “평생동안”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종신동안”을 “평생동안”으로 하며, 같은 표 4급의 신체장해란 제6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리스푸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로 하며, 같은 표 5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및 제5호 중 “기능이 전폐된”을 각각 “기능을 모두 잃은”으로 하고, 같은 표 6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및 제6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표 7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리스푸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8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표 9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반맹증),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및 제11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표 10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표

11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및 제8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표 12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복장뼈(흉골)·갈비뼈·어깨뼈나 또는 골반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장관골”을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및 제11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1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및 제6호 중 “지골”을 각각 “뼈”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말관절을 굴신할”을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로 하고, 같은 표 13급의 신체장해란 제10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14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지골”을 “뼈”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말관절을 굴신할”을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이상”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이상”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의 말단의”를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로,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을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에서는

가락뼈사이관절)”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중 “발가락의 폐용이란”을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것이란”으로, “말관절의”를 “끝마디뼈의”로, “말관절”을 “끝마디뼈”로, “중족지관절이나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이나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에서는 가락뼈사이관절)”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보상금내역의 보상금란 제1호 중 “일실수익”을 “잃은수익”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 제3호 중 “자상”을 “자상(찔린상처)”으로 한다.

제3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지불하는”을 각각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불정지된”을 “지급정지된”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1) 중 “첫 지불액”을 “첫 지급액”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3) 중 “지불하도록”을 “지급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를 “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별표 2 제2호카목2) 중 “입식”을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으로 한다.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2) 중 “운금”을 “운임”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1)가) 중 “결행”을 “미운행”으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재판에 계류”를 “재판이 계속”으로 한다.

제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를 “환토(흙 바꾸기)하거나 객토(새 흙 넣기)”로, “개답(開畓)”을 “개답(논을 고쳐 만듦)”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성토(盛土)”를 “성토(흙쌓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양안(兩岸)”을 “양쪽 기슭(양안)”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나목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한다.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경종업(耕種業)”을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으로 한다.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1조의4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하목나) 중 “쇄석”을 “쇄석(부순 돌)”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8)의 시설의 종류란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하며, 같은 8)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나)의 단서 중 “양안”을 “양쪽 기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3)의 시설의 종류란 중 “물양장”을 “물양장(소형선 부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중 “절토(切土)”를 “절토(땅깎기)”로 한다.

별표 3 제32호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다목 중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투수성(非透水性) 재질로 포장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를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의 재질로 포장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

로 환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불(受拂)”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제36조제4항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9조(「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심의에 부의하기”를 “회의에 부치기”로 한다.

제10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의 범위란 중 “공기토출량”을 “공기배출량”으로 한다.

제12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집수정(集水井)”을 “집수정(물저장고)”으

로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1.1 주요부실내용란의 가) 중 “절토·성토”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의 제1호 중 “현수교”를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로 한다.

제13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의개서를”을 “명의 기재변경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서”를 “기재변경”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을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노임”을 각각 “임금”으로 한다.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의 제2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성토·절토”를 “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로 하고, 같은 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의 제3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도막공사”를 “도막(도료 도포막)공사”로 하며, 같은 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란의 제8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PVC가공”을 “폴리염화비닐(PVC) 가공”으로 하고, 같은 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의 제16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수세회복공사”를 “수세(樹勢) 회복공사”로 한다.

별표 4 제6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를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을 “①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①실내의장”을 “①실내건축”으로 한다.

제1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개정) 건전가정의례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입회인”을 각각 “참관인”으로 한다.

제15조(「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 중 “수준(水準)”을 “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다목2) 중 “반발경도측정기”를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로 하며, 같은 목 8) 중 “피막”을 “도포막”으로 한다.

제16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펜스”를 “안전울타리”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감화원”을 “소년원”으로 한다.

제17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조(「검사인사규정」의 개정) 검사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경향교류(京鄕交流)”를 “수도권과 지방 교류”로 한다.

제19조(「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관인관수”를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관인관수”를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관인관수”를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0조(「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이급여금)”을 “(부상 및 장애 급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이급여금”을 “부상 및 장애 급여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상이자”를 각각 “부상자 및 장애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을 “(부상 및 장애 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이급여금”을 각각 “부상 및 장애 급여금”으로 한다.

제5조 중 “상이급여금”을 “부상 및 장애 급여금”으로 한다.

제2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공동구”를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시설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굴착”을 “굴착(땅파기)”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용지도”를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로 한다.

제14조의2제4호 중 “정압조정실을”을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제3호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적은”으로 한다.

제22조(「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피교육자”를 “교육 대상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피교육자”를 각각 “교육 대상자”로 한다.

제2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상병명”을 “질병·부상명”으로 한다.

제24조(「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신애로써”를 “존중으로써”로 한다.

제25조(「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병과할”을 “병행할”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병과할”을 “병행할”로, “병과하여”를 “병행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병과하여”를 “병행하여”로 한다.

제26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제27조(「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를 “학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8조(「경찰위원회규정」의 개정)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그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9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1호 중 “요인보호계획”을 “주요 인사 보호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교육기재”를 “교육용 기구 및 재료”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겸보 할 수 있다”를 “겸하여 임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관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0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두류”를 “콩류”로 한다.

별표 2 제6호마목 중 “경도”를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입자의 입도”를 “입자 크기”로, “입도는”을 “입자 크기는”으로 한다.

별표 9 제12호라목 설비규격란의 1) 중 “정격”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및 고목의 설비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소목의 설비명란 중 “서지”를 “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로 한다.

차.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고.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별표 2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성상”을 “성질·상태”로 한다.

제31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 중 “입회조사”를 “참관조사”로 한다.

제32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단조설비”를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설비”로 한다.

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본문 중 “중등도”를 “중등도(重等度)”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중등도 장애란 및 경도 장애란 중 “체표면적”을 각각 “신체 표면”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중등도 장애란 및 경도 장애란 중 “체표면적”을 각각 “신체 표면”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중등도 장애란 및 경도 장애란 중 “체표면적”을 각각 “신체 표면”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고도 장애란 1) 중 “하반신 불수”를 “하반신 마비”로,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를 “몸의 왼쪽 또는 오른쪽의 마비”로 하며, 같은 목 중등도 장애란 1) 중 “개호인”을 “간병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중등도 장애란 중 “고관절(股關節)”을 “고관절(엉덩관절)”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고도 장애란 1) 중 “고식적”을 “고식적(palliative)”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경도 장애란 1) 중 “비장종대(脾臟腫大)”를 “비장종대(비장비대)”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경도 장애란 중 “심낭삼출(心囊滲出)”을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경도 장애란 1) 중 “중족지절관절”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로, “근위지절간관절”을 “근위지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로 한다.

별표 2 제1호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의 고도 장애란 바목 중 “하반신 불수”를 “하반신의 마비”로, “개호를 요하는”을 “간병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란 사목 중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를 “몸의 왼쪽 또는 오른쪽의 마비”로 한다.

제34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5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9항제9호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6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를 “절토(땅깎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토털 스테이션”을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으로 한다.

제37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8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3 중 “탈산·소독 장비”를 “탈산(脫酸: 산성 제거)· 소독 장비”로 하고, 같은 호의 4의 조명란 중 “300룩스”를 “300럭스”로, “200룩스”를 “200럭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4의 조명란 중 “300룩스”를 “300럭스”로, “200룩스”를 “200럭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4의 조명란 중“300룩스”를 “300럭스”로 “200룩스”를 “200럭스”로 한다.

대통령령 제3058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의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탈산·소독장비”를 “탈산(脫酸: 산성 제거)·소독장비”로 하고, 같은 호 4의 조명란, 제2호의 4의 조명란 및 제3호의 4의 조명란 중 “룩스”를 각각 “럭스”로 한다.

제39조(「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정지(整地)”를 “정지(整地: 땅고르기)”로 한다.

제60조제2호 중 “취토장(取土場)”을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7)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쇄석”을 “쇄석(부순 돌)”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를 “환토(換土: 흙 바꾸기)하거나 객토(客土: 새 흙 넣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자목 중 “펜스”를 “울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음용수용”을 “먹는물용”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획지정리”를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정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1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결선(結線)”을 “전선 연결”로, “입상(立像)”을 “입상(서 있는 상태)”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제4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로 한다.

제43조(「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본문 중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을 “현역으로 복무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1) 본문 중 “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을 “현역으로 복무한”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1) 본문 중 “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을 “현역으로 복무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본문 중 “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을 “현역으로 복무한”으로 한다.

별표 23의 제목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로 하고, 같은 표 산정공식란 중 “(학령－16)＋가산연수＝”를 “(총수학연수－16)＋가산연수＝”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학령이란”을 “총수학연수란”으로 한다.

제4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병용(竝用)하는”을 “겸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을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비고 제1호 중 “접적해역”을 “적과 접촉하는 해역”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 비고 제1호 중 “연륙교(連陸橋), 연도교(連島橋)”를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별표 7의2 제3호 비고 제2호 중 “접적지역이”를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로, “접적지역의”를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로 한다.

별표 9 제2호 병종의 다목 중 “검안”을 “검안(사체 검사)”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병종의 다목 중 “종축”을 “종축(씨가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을종의 사목 중 “낙반”을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으로, “단애·절벽·암산·낭떠러지”를 “절벽·바위산·낭떠러지”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병종의 카목 중 “육림”을 “육림

(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으로 한다.

별표 10의 을종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패스트로프"를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한다.

제4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을 "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중 "전지(轉地)"와 "전지"를 각각 "다른 지역에서"로 한다.

제46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7조(「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8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단서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신설·개폐"를 "신설·개정·폐지"로 한다.

제49조(「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병과 등)"을 "(실기시험의 병행 등)"으로 한다.

제50조(「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의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근성(筋性)"을 "근육"으로 한다.

제81조제3호 중 "장제(葬祭)"를 "장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회합"을 "모임"으로 한다.

별표 3 제12급 제5호 중 "흉골·늑골"을 "흉골(복장뼈)·갈비뼈"로 한다.

제51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훈"을 "훈장·포장 수여"로 한다.

제22조 중 "시제품(試製品)"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52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53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검진기관] 제1호 중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으로 하고, 제3호나목 중 “사지”를 “팔다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전문의] 제1호 중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의료기관] 제1호 중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으로 한다.

제54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저서생물(低棲生物)”을 “저서생물(低棲生物: 바

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선가대(船架臺)”를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호안(護岸)·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방파제·배수시설·공원”을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안벽(부두벽)·소형선 부두·방파제·배수시설·공원”으로 한다.

제5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을 “월 단위 또는 날짜 단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이식(移植)”을 “옮겨심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식하거나”를 “옮겨 심거나”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월할 또는 일할”을 “월 단위 또는 날짜 단위”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이식”을 “옮겨심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식하거나”를 “옮겨 심거나”로 한다.

제83조제2항제2호 중 “계류되어”를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되어”로 한다.

제57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지출예산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예산수지를”을 “예산수입·지출을”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지출예산서”로 한다.

제18조의3제4항제2호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지출예산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지상태”를 “수입·지출상태”로 한다.

제58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재판에 계류”를 “재판이 계속”으로 한다.

제59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60조(「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1조(「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제62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

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63조(「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4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노유자시설”을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로 한다.

제65조(「공증인법 시행령」의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압날한”을 “눌러찍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천공(穿孔)방식”을 “구멍 뚫기 방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상신”을 “보고”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2호 중 “상신”을 “보고”로 한다.

제66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목”을 “편철항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기”를 “이기(移記)”로 한다.

제31조 단서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편철필증)”을 “(편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편철필증”을 각각 “편철확인증”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편철필증”을 “편철확인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개”를 각각 “여러 개”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67조(「공항시설법 시행령」의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로 한다.

제68조(「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6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2호 중 “위성항법장치(GPS)”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한다.

제70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71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제3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00조제5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236조의9제4항 본문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4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3조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2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73조(「광산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선진천공(先進穿孔) 및 안전광주(安全鑛柱)”를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 및 안전광주[갱내외 주요시설(갱도포함)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부석(浮石) 또는 전석(轉石)”을 “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 또는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인차(人車)의”를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의”로, “인차의”를 “사람 수송용 차량의”로 한다.

제74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 장비란의 가목 중 “굴진능력”을 “시추깊이”로 하고, 같은 란의 나목 중 “(교반기·펌프·유량계)”를 “[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펌프·유량계]”로 한다.

제75조(「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원본(元本)”을 “원금”으로 한다.

제76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77조(「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병기하고”를 “함께 적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기하고”를 “함께 적고”로 한다.

제7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의지”를 “인공팔다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호송·전원·퇴원”을 “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으로 한다.

제79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80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제81조(「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개폐(改廢)”를 “개정·폐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로 한다.

제82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현장실사”를 각각 “현장 실제 조사”로 한다.

제15조의11제4항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제8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을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첩”을 “이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이첩”을 각각 “이관”으로 한다.

제85조(「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6급의 신체장해란제3호 중 “이각”을 “귓바퀴”로,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제2호 중 “해득”을 “이해”로 하며, 같은 표 제10급의 신체장해란제4호 중 “이각”을 “귓바퀴”로,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표 제11급의 신체장해란제4호 중 “해득”을 “이해”로 하며,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제4호 중 “이각”을 “귓바퀴”로 한다.

제86조(「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통리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7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8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시작품(試作品)”을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판권”을 “출판권”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3호나목 중 “시작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검안서”를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전원”을 “전원(轉院)”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2-1의 기준 및 범위란 나목 중 “요인”을 “주요 인사”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요인”을 “주요 인사”로 한다.

별표 2 제11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를 “상반신 또는 하반신의 마비”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를 “왼쪽 또는 오른쪽의 마비”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신체상이별란 4) 중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을 “창자샛길과 함께 요로샛길 또는 방광샛길을”로, “루”를 “샛길”로, “장피누공”을 “장피부샛길”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고관절(股關節)”을 “고관절(엉덩관절)”로 하며, 같은 표 제27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뇌골(腦骨)”을 “뇌골(뇌머리뼈)”로, “헤르니아(hernia)가”를 “탈장이”로 하고, 같은 표 제28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수장부(手掌部)”를 “손바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2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추상(醜相)”을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쇄골, 견골”을 “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로 하며, 같은 표 제36호의 신체상이별란 중 “좌골이나”를 “궁둥뼈나”로 한다.

별표 3 제1호 4급의 1107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시야협착”을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으로 하고, 같은 호 6급 2항의 111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반맹증”을 “반맹증(한쪽시야결손)”으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1204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복시가”를 “겹보임[복시(複視)]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6급 1항의 2104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중등도”를 “중등도(重等度)”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2411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반흔조직(瘢痕組織)”을 “흉터조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2급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안면부”를 “얼굴 부위”로, 같은 란 중 “추상(醜相)”을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하며, 같은 호 3급의 3102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안면부”를 “얼굴 부위”로, 같은 란 중 “추상”을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하고, 같은 호 5급의 3110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를 “머리, 얼굴 또는 경부(목)”로 하며, 같은 호 6급 2항의 3107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두부, 안면부”를 “머리, 얼굴 부위”로 하고, 같은 호 7급의 310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두부, 안면부”를 “머리, 얼굴 부위”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7급의 6203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부정유합(不整癒合)”을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4급의 7110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전박의지(前膊義肢)"를 "인공 아래팔"로 하며, 같은 호 6급 1항의 7115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같은 란 중 "반흔"을 "흉터"로 하고, 같은 호 6급 2항의 7304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강직된"을 "굳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4급의 810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하퇴의지(下腿義肢)"를 "인공다리(종아리 이하 부분)"로 하고, 같은 호 6급 1항의 8114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반흔"을 "흉터"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질병명란 중 "양극성 정동장애"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질병명란 중 "안면"을 "얼굴"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라목 중 "개호(介護)가"를 "간병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한다.

제90조(「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입회하는"을 각각 "참석하는"으로 한다.

제91조(「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병기하고"를 "함께 적고"로 한다.

제11조 중 "부의함에 있어서"를 "부치는 경우"로 한다.

제92조(「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권종(券種)"을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권종별 액면금액"을 "종류별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권종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3조(「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의 측정대상란 중 "응력(應力)"을 "응력(변형력)"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의 측정대상란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파목의 측정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

별표 6 제1호나목1)나) 단서 중 "압인(押印)·타인(打印)·각인(刻印)"을 "압인(押印: 눌러 찍음)·타인(打印)·각인(刻印: 새김도장)"으로 한다.

제94조(「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5조(「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의 개정)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피복비"를 "의류비"로 한다.

제96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개정)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피복비”를 “의복비”로 한다.

제97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입회 및 기록”을 “운영”으로 한다.

제98조(「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99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독(除毒)”을 “독성제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독”을 “독성제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제독”을 “독성제거”로 한다.

제100조(「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훈을 하거나”를 “훈장·포장을 수여하거나”로 한다.

제21조 중 “시제품(試製品)”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101조(「국민투표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명기하고”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하고”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명기하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기하며”를 “명확하게 기록하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주 제2호 중 “명기하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로 한다.

제102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손·망실(損·亡失)”을 “손실·분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03조(「국새규정」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도를 감안하여”를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4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16제4항제3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105조(「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속행하여야”를 “계속 진행하여야”로 한다.

제106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07조(「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를 “기관차·전차·객차(客車)”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이식을”을 “옮겨심기를”로 한다.

제76조제3항제2호가목 중 “폐도”를 “폐쇄도로”로 한다.

제108조(「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09조(「국제우편규정」의 개정)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을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기별납하거나 후납”을 “후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납·계기별납”을 “별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제반신우표권)”을 “(국제회신우표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반신우표권”을 각각 “국제회신우표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계기별납하거나 후납하는”을 “후납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연기식(連記式)”을 “잇따라 적는 방식으로 된”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110조(「국채법 시행령」의 개정)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제111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육운”을 “육상 운송”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5호 중 “주정음료(酒精飮料)”를 “주정음료(에틸알코올 희석 또는 불순물 정제를 거친 주류)”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1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구거”를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중 “획지면적”을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정지”를 “정지(땅고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토”를 “객토(새 흙 넣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오니”를 “오니(오염된 침전물)”로 한다.

제63조제3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별표 1 제7호카목 중 “조사료(粗飼料)”를 “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6) 중 “물양장”을 “물양장(소형선 부두)”으로 한다.

별표 25 제2호나목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한다.

제113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기된”을 “명확하게 기록된”으로 한다.

제114조(「군인복제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제115조(「歸屬財産訴請審議會規程」의 개정) 歸屬財産訴請審議會規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6조(「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의 개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본문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11조 중 “계출”을 각각 “신고”로 한다.

제12조 중 “대금지불방법”을 “대금지급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2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40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3조 중 “사무소에 임검하여”를 “사무소를 현장 조사하여”로 한다.

제58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제117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8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호 중 “실사”를 “실제 조사”로 한다.

제119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무인”을 “손도장”으로 한다.

제120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21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22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예상수지계산서”를 “예상수입·지출계산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예상수지계산서”를 “예상수입·지출계산서”로 한다.

제123조(「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권종(券種)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권종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124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25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절리(節理) 상태”를 “갈라진 상태”로 한다.

제126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소화(消化)”를 “습득(習得)”으로 한다.

제127조(「기술사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병기할”을 “함께 적을”로 한다.

제128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토석·사력”을 “토석(土石)·사력(자갈)”으로 한다.

제31조제4호 단서 중 “정압조정실을”을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29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유지(溜池)”를 “유지(溜池: 웅덩이)”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비점(沸點)”을 “끓는점”으로 한다.

제130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제품(試製品)”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131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32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정선(停船)”을 “선박운항정지(정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추월하려는”을 “앞지르기하려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하거나”를 “앞지르기하거나”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가공미끼(어분·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를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로 한다.

제133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로 한다.

제134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의 금지기간란 단서 중 “호소(湖沼)”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제135조(「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단할인법(單割引法)”을 “단리할인법”으로 한다.

제136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7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액(養液)”을 “배양액”으로 한다.

제138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조림자금”을 “조림(造林)자금”으로 한다.

제139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업무프로세스”를 “업무절차”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 중 “한해(旱害)”를 “가뭄해”로 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동정(同定)”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한다.

제140조(「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의 개정)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 전도교부와 정산)”을 “(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도교부를”을 “선지급교부를”로 한다.

제141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개산액(槪算額)”을 “추산액”으로 한다.

제14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남빙양”을 “남극해”로, “북빙양”을 “북극해”로 한다.

제143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암거”를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로, “측구”를 “길도랑(측구)”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방설시설”을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방음림”을 “방음숲”으로 한다.

6.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제144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

제145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실사”를 각각 “실제 조사”로 한다.

제146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4조제3항제9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47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관인관수”를 “관인의 보관 및 관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8호 중 “시비”를 “비료사용처방”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분류동정”을 “분류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대사산물”을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관인관수”를 “관인의 보관 및 관리”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다모작”을 “이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두 번 심어 거둠) 또는 다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세 번 이상 심어 거둠)”으로 한다.

제34조 중 “사양(飼養)”을 “사양(기르기)”으로 한다.

제148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치어”를 “치어(어린물고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3의2 제30호 중 “육분·골분”을 “육분(고깃가루)·골분(뼛가루)”으로 한다.

별표 4 제10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

37. 어선용 호종(선박위치알림종)

별표 5 제9호 중 “양액”을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중 “조사료(粗飼料)”를 “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로 한다.

제14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50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1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 중 “지불해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152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을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손모량(損耗量)”을 “손실량”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손모량”을 “손실량”으로 한다.

제54조의5제2호나목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제153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수발(受發)”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반신불수”를 “몸 왼쪽 또는 오른쪽의 마비”로 하고, 같은 표 제4급의 신체장해란 제7호 중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발목발허

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로 하며,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중등도"를 "중등도(重等度)"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리스프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9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반맹증),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장관골"을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로 하며, 같은 표 제1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수지관절"을 "손허리손가락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중족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한다.

제154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제155조(「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이첩한다"를 "이관한다"로 한다.

제156조(「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장애 종류란 중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로 한다.

별표 5 제4호 중 "조도"를 "조도(照度: 밝기)"로 한다.

제157조(「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방음림"을 "방음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원표(道路元標)"를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를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굴진(掘進)방식"을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개착(開鑿)방식"을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라목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암거”를 “속(안)도랑”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가목 중 “안전펜스”를 “안전울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 및 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전주”를 각각 “전봇대”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며, 같은 호 사목2)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도괴(倒壞)”를 “무너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점용물의 종류란 중 “전주”를 각각 “전봇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점용물의 종류란 중 “암거”를 “속(안)도랑”으로 한다.

제158조(「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부의할”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159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절토·성토”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분합”을 “분할·합병”으로 한다.

제71조제4호 단서 중 “정압조정실을”을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로 한다.

제16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제27조제7호 중 “성토(盛土)”를 “성토(흙쌓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점용할 수 있는 대상란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정지(整地)”를 “정지(땅고르기)”로 한다.

별표 2 제5호가목(가)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별표 3 제4호바목 중 “절토”를 “절토(땅깎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2) 중 “토취장”을 “흙채취장 또는”으로 한다.

제16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절토·성토”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로 한다.

제162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를 “절토(땅깎

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로 한다.

제163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단서 중 "정압조정실을"을 "정압(定壓) 조정실을"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6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165조(「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6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3호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합병·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을 "합병·인수, 법정관리신청"으로 한다.

제167조(「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의 개정)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무균제제(無菌製劑, 주사제·점안제 및 안연고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무균제제[無菌製劑, 주사제·점안제(點眼劑: 안약) 및 안연고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미생물을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에 이식하는 시설

제1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덴타(tenter)"를 "텐터(tenter, 원료를 주형에 맞게 펴는 공정)"로 한다.

제168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로 한다.

제16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70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호안(護岸)”을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안벽(岸壁), 물양장(物揚場)”을 “안벽(부두벽), 소형선 부두”로,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를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램프”를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로 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를 “절토(땅깎기), 성토(盛土), 정지(땅고르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용지도(用地圖)”를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로 한다.

제32조의5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32조의6제2항제2호나목 본문 중 “선석(船席)”을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및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각각 “소형선 부두”로 한다.

제171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제품(試製品)”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제172조(「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자(外資)”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시(國是)”를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제173조(「모범공무원 규정」의 개정)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표의 제목 중 “제식표”를 “제작 양식표”로 한다.

제174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문서 접수·발송

제175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가목 공통기준 번호 2)의 세부기준란 후단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한다.

제176조(「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7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수발”을 “수신·발신”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8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발”을 “수신·발신”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수신·발신”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수신·발신”으로 한다.

제178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흙고르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호안”을 “호안(기슭·제방 보호시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정압조정실을”을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2조제3항제2호 중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179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제1호라목 중 “증적(證迹)”을 “자취”로 한다.

제22조제6항제2호라목 중 “증적”을 “자취”로 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소화·개량된”을 “익히고 개량된”으로 한다.

제180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를 “절토(切土: 땅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로 한다.

제181조(「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나목 중 “소산(疏散)”을 “소산(疏散: 분산시킴)”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일할계산(日割計算)한”을 “일 단위로 계산한”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를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입회시켜야”를 “참관시켜야”로 한다.

별표 1의2 제4급의 장애의 정도란 제9호 중 “가관절(假關節)”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

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5급의 장애의 정도란 제2호 중 "반맹증(半盲症)"을 "한쪽시야결손(반맹증)"으로 하며, 같은 표 제6급의 장애의 정도란 제3호 중 "반맹증"을 "한쪽시야결손"으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을 "빗장뼈·복장뼈(흉골)·늑골(갈비뼈)·견갑골(어깨뼈)"로 하며, 같은 란 제15호 중 "장관골(長管骨)"을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경계관제란 중 "누광(漏光) 방지"를 "빛이 새는 것을 방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공습관제란 중 "누광 방지"를 "빛이 새는 것을 방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공습관제란 중 "누광 방지"를 "빛이 새는 것을 방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공습관제란 중 "누광 방지"를 "빛이 새는 것을 방지"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공습관제란 중 "누광"을 각각 "빛이 새는 것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마목의 공습관제란 중 "누광 방지"를 "빛이 새는 것을 방지"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사목의 공습관제란 중 "누광방지"를 "빛이 새는 것을 방지"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의 경계관제란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승객대합실등"을 "승객대기실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라목 중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다목 중 "부두대합실"을 "부두대기실"로 한다.

제182조(「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용동

제14조제1항제1호 중 "수용사동"을 "수용동"으로 한다.

제183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지조사"를 각각 "현장조사"로 한다.

제184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85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건설노임단가통계에"를 "건설임금단가통계에"로, "건설노임단가통계도"를 "건설임금단가통계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각각 "간병비"로 한다.

별표 3 제1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기능이 전폐된"을 "기능을 모두 잃은"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개호(介護)를"을 "간병을"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반신불수"를 "몸 왼쪽 또는 오른쪽의 마비"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및 제9호 중 "기능이 전폐된"을 각각

“기능을 모두 잃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기능이 전폐된”을 “기능을 모두 잃은”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종신”을 “평생”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종신”을 “평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4급의 신체장해란 제6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리스푸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로 하고, 같은 표 제5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및 제5호 중 “기능이 전폐된”을 각각 “기능을 모두 잃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6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및 제6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리스푸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며, 같은 란 제11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8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9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반맹증),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및 제11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급의 신체

장해란 제4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해득하지”를 “알아듣지”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및 제8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나 또는 골반뼈”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장관골”을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및 제11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엄지손가락의 지골”을 “엄지손가락의 뼈”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지골”을 “뼈”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말관절을 굴신할 수”를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 수”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폐용된”을 각각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지골”을 “뼈”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말관절을 굴신할 수”를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 수”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폐용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의 말단의”를 “손가락을 못 쓰

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로, "중수지관절"을 "손허리손가락관절"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발가락의 폐용"을 "발가락을 못쓰게 된 것"으로, "말관절"을 각각 "끝마디뼈"로, "중족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로,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로 한다.

별표 5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나) 앞쪽 신청사유의 제9항 중 "개호"를 "간병"으로 하고, 같은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7호 중 "개호비"를 각각 "간병비"로 하며,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자상"을 "자상(찔린상처)"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보상액내역의 보상금란 제1호 중 "일실수익"을 "잃은수익"으로 하고, 같은 뒷면 보상금내역의 의료지원금란 제5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186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7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불하려는"을 "지급하려는"으로 한다.

제188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표 중 "유전소(油專燒) 화력"을 "유류 화력"으로 한다.

제189조(「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90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중 "연주소(演奏所)"를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로 한다.

제52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순연할"을 "순차적으로 연기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순연된"을 "순차적으로 연기된"으로 한다.

제60조의6제1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91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92조(「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송통신설

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핸드홀(handhole)”을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로 한다.

제193조(「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7호 중 “조사이첩”을 “조사이관”으로 한다.

제19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손망실”을 “손실·분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6호 중 “양산품(量産品)”을 “대량생산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3호 중 “양산품”을 “대량생산품”으로 한다.

제195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척수(隻數)”를 “선박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제196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단서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노임단가”를 각각 “건설임금단가”로, “정부노임단가”를 각각 “정부임금단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지출 예산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모사전송”을 각각 “팩스”로 한다.

제197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형”을 “형 집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0호 중 “피복 및 급양(給養)”을 “의복 및 음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피복·급양”을 “의복·음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형”을 “형 집행”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형사무”를 “형 집행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피복 및 급양”을 “의복 및 음식”으로 한다.

제26조 중 “행형”을 “형 집행”으로 한다.

제198조(「법무자문위원회규정」의 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리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99조(「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2조의6제4항제7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2조의7제2항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2조의1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97조제11항 본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6조제2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29조의3제1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4조제8항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00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01조(「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사권(私權)”을 “사법(私法)상 권리”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5호 중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02조(「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의 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상회하는”을 “웃도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제(葬祭)”를 “장례”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개산금”을 “추산금”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1호 중 “개산금”을 “추산금”으로 한다.

제203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명찰”을 각각 “이름표”로 한다.

제204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을 “의료정책·약무정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6호 중 “지불체계”를 “지급체계”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지불제도”를 “지급제도”로 한다.

제205조(「보안관찰법 시행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히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20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와 그 종물

별표 1 제11호다목 중 “액비화(液肥化)”를 “액체비료화”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14호 중 “우수저류시설”을 “빗물저장시설”로 한다.

가.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

별표 2 제139호 중 “담수어”를 “민물고기”로하고, 같은 표 제142호 중 “치어(稚漁)”를 “치어(어린물고기)”로 하며, 같은 표 제2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0. 날림 먼지 저감사업

제207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실지조사”를 “실제 조사”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208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성행개선”을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으로 한다.

제209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계류 중”을 “계속 중”으로 한다.

제23조 중 “표석(表石)을”을 “표지를”로 한다.

제21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검안서”를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매식(買食)한”을 “사서 먹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개호(介護)가”를 “간병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한다.

제211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입회인”을 “참관인”으로 한다.

제21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지불한”을 각각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

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times \frac{\text{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text{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제104조제1항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3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의 2), 같은 호 라목 비고의 1)나) 및 같은 호 마목 비고의 1)나) 중 “해태한”을 각각 “이행하지 못한”으로 한다.

제214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15조(「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건설노임단가통계에”를 “건설임금단가통계에”로, “건설노임단가통계도”를 “건설임금단가통계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호비(介護費)”를 “간병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별표 2의 제1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반신불수”를 “몸 왼쪽 또는 오른쪽의 마비”로 하고, 같은 표 제4급의 신체장해란 제7호 중 “족

근중족(Lisfranc) 관절”을 “발목발허리(Lisfranc)관절”로 하며,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7호 중 “족근중족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며, 같은 표 제9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반맹증),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장관골(長管骨)”을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로 하고, 같은 표 제1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한쪽시야결손,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지관절”을 “손가락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중수지관절”을 “손허리손가락관절”로,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중 “중족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로,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나) 앞쪽 제9항 중 “개호”를 “간병”으로 하고, 같은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개호비”를 각각 “간병비”로 하며,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자상”을 “자상(찔린 상처)”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가) 뒤쪽 보상액 명세의 제1호 중 “일실수익”을 “잃은수익”으로 하고, 같은 뒤쪽 보상액 명세의 제5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216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성상(性狀)”을 “성질·상태”로 한다.

제217조(「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피복류·피혁류”를 “의복류·가죽류”로 한다.

제18조 중 “감모(減耗)”를 “자연손실”로 한다.

제218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단서 중 “상회하는”을 “웃도는”으로 한다.

제219조(「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응력측정”을 “응력(변형력)측정”으로 한다.

제220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별도1(평면도) 표의 8란 중 “직선(기선)”을 “직선(기준선)”으로 하고, 같은 표 별도 3 평면도 표의 EAF란 중 “기선”을 “기준선”으로 한다.

별표 4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3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4의 별도 8 제1호 중 “강철지주”를 “강철기둥”으로 하고, 같은 별도 제3호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하며, 같은 별도 제8호 및 제9호 표 외의 부분 중 “강철지주”를 각각 “강철기둥”으로 한다.

별표 4의 별도 10의 제2호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한다.

별표 7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2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14의 표적의 구조·설비란 제3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표 15의 버팀판의 구조·설비란 제2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221조(「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222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223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을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한다.

제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복표”를 “복권”으로 한다.

2.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복표발행업”을 각각 “복권발행업”으로 한다.

별표의 영업의 종류란 중 “복표발행업”을 “복권발행업”으로 하고, 영업방법란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과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2호·제3호 중 “복표”를 각각 “복권”으로 한다.

제224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용지도”를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한다.

제225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2) 중 “염생산업”을 “소금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염생산업인”을 “소금생산업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염생산업”을 “소금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 (2) 중 “염생산업”을 “소금생산업”으로 한다.

제226조(「산림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입목·죽이”를 각각 “입목·대나무가”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예방·구제”를 “예방·제거”로 한다.

제68조제11호 중 “예방·구제”를 “예방·제거”로 한다.

제228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채수포(埰穗圃)”를 “채수포(採穗圃: 꺾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로 한다.

제229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시작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230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3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12호 중 "버킷굴삭기"를 "버킷굴착기"로 한다.

제23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별표 1 비고의 제4호 본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3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호스팅"을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으로 한다.

제49조제6항제2호 중 "대금지불방법"을 "대금지급방법"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제234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1호 및 제52호 중 "피혁"을 각각 "가죽"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 중 "(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4조제3항제67호 중 "광해방지기본계획"을 "광해(광산피해)방지기본계획"으로, "광해(鑛害)"를 "광산피해"로 한다.

제45조제4항제10호 중 "문서 수발"을 "문서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35조(「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중 "입목·죽"을 "입목·대나무"로 한다.

제20조의3제5항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중 "입목·죽이"를 "입목·대나무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적용대상사업란 도로의 세부기준란 2) 중

“절취고(切取高)”를 “토양을 잘라낼 높이”로 한다.

제2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31조의2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8조제2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의 계산식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6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감안한”을 각각 “고려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frac{\text{신탁재산가액} + \text{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text{원천징수세액상당액}}{(1 + \text{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제61조제2호가목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frac{\text{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1 + \text{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제61조제2호나목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text{원천징수세액상당액}}{(1 + \text{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70조제3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37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수지계산서”를 “수입·지출계산서”로 한다.

제238조(「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39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40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토취장”을 “취토장(흙 채취장)”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토취장”을 “취토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토취장”을 “취토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를 “절토(切土: 땅깎기)·성토(盛土: 흙쌓기)·정지(整地: 땅고르기)”로 한다.

제31조의10제1항제3호 중 “권종(券種)별 액면금액”을 “종류별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으로 한다.

제241조(「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의 개정)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42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조혈기계”를 “조혈계(혈구형성계통)”로 한다.

제243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4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4 비고의 제3호 중 “VAN, ARS”를 “부가가치통신망(VAN),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한다.

제245조(「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입도(粒度)”를 “입자 크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류(乾溜)”를 “건류(석탄 등 고체 유기물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일)”

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광재”를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로 한다.

제246조(「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용골(龍骨)”을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로 한다.

제247조(「선박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7) 중 “사이드포트, 램프웨이”를 “사이드포트(하역을 위한 선체 옆면 출입구), 램프웨이(경사식 진출입 통로)”로, “강제햇치카바”를 “강제해치커버(갑판 아래 짐칸 입구를 강제로 덮는 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8) 중 “예인색”을 “예인용 줄”로 한다.

별표 2 제1호 항해의 과목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도[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

제248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249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입회”를 “가입”으로 한다.

제250조(「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4항제2호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4조제5항의 계산식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9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93조제3항제2호 중 “모사전송으로”를 “팩스로”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51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정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252조(「소방공무원기장령」의 개정)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53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병과”를 “포함”으로 한다.

제254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력(前歷)”을 “과거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개폐”를 “개편·폐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개폐”를 “개편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55조(「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256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표 1의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내용란 가목 중 “배기닥트”를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로 한다.

제257조(「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58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기호(■) 섬유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 제3호 중 “데시케이터”를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로 하고, 같은 기호(■)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 제3호 중 “데시케이터”를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로 한다.

제259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성상(性狀)”을 “성질·상태”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의 품목란 중 “실링백(sealing bag)”을 “실링백(sealing bag: 공기를 주입해 액체 누출물을 막는 장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품목란 중 “리프트 잭”을 “리프트잭(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구의 하나)”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품목란 중 “헬멧”을 “안전모”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노임(勞賃)단가”를 “임금단가”로,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제260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26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제262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263조(「소청절차규정」의 개정)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21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으로 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64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65조(「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증명신청서”를 “각종 증명신청서”로 한다.

제266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개산액(槪算額)”을 “추산액”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개산액”을 “추산액”으로 한다.

제267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교반기(攪拌機)”를 “교반기(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구)”로 한다.

제268조(「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 모양의 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안강망”을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으로 한다.

제38조 중 “저질(底質)”을 “밑바닥 퇴적물(저질)”로 한다.

제41조제6호 중 “양륙(揚陸)”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가) 중 “양륙량(揚陸量)”를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으로 하고, 같은 목 3)가) 제3호제1항 중 “의장품(艤裝品)”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하며, 같은 목 3)나)(2)(가) 전단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하고, 같은 (2)(나) 표의 선질별란 중 “F.R.P.선”을 “강화플라스틱(FRP)선”으로 한다.

제269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호 중 “어획고”를 “어획량”으로 한다.

제270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선발육종(選拔育種)”을 “품종개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 본문 중 “유자망”을 “유자망(유동성그물)”으로 한다.

별표 16 제3호자목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제271조(「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채묘연(採苗漣)”을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으로 한다.

제272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별표 1의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돛[범장(帆裝)]

별표 7 제8호 중 “추월하려는”을 “앞지르기하려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하거나”를 “앞지르기하거나”로 한다.

제273조(「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예항사실 등의 통보)”를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항(曳航)”을 “예인항해”로 한다.

제274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원재료수불대장 및 수출물품수불대장”을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으로 한다.

제275조(「수형자 등 호송 규정」의 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속행하고”를 “계속 진행하고”로 한다.

제276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권양(捲揚)장치”를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설비의 시험 검사 설비의 등록기준란 3)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로 하고, 같은 란 6)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하며, 같은 란 7) 중 “조도계”를 “밝기측정기”로 하고, 같은 란 10) 중 “토크렌치”를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공구)”로 하며, 같은 란 13) 중 “오실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설비의 시험검사설비의 등록기준란 3) 및 다목 설비의 시험검사설비의 등록기준란 1) 및 라목 설비의 시험검사설비의 등록기준란 1)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각각 “아들자 캘리퍼스”로 한다.

별표 4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의 승강기안전부품란 제1호 및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별표 6 제1호 1급의 상해 내용란 제4호 중 “외상성 두 개강내출혈”을 “외상 머리뼈안(두개강)출혈”로, “개두수술(開頭手術)”을 “머리뼈 절개 수술”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며, 같은 호 2급의 상해 내용란 제2호 중 “설상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방굴곡에 의한 척추 앞부분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안정성 골절)”을 “쐐기모양 압박 골절”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천장골 간 관절”을 “엉치엉덩관절”로 하고, 같은 호 3급의 상해 내용란 제10호 중 “내외측반월상 연골”을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로, “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을

"속무릎장애[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로 하며, 같은 호 4급의 상해 내용란 제6호 중 "위팔뼈외측상과 전위골절"을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골절(뼈가 어긋나는 골절)"로 하고, 같은 호 5급의 상해 내용란 제1호 중 "말가이그니씨 골절"을 "말게뉴 골절"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내외과골절"을 "안쪽·바깥쪽 복사골절"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족중골"을 "발허리뼈"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원위부"를 "먼쪽부위"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근위부"를 "몸쪽부위"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늑골"을 "갈비뼈"로, "혈흉"을 "혈액가슴증(혈흉)"으로, "기흉"을 "공기가슴증(기흉)"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근건"을 "근육힘줄"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근건"을 "근육힘줄"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아킬레스건"을 "아킬레스힘줄"로 하며, 같은 호 6급의 상해 내용란 제5호 중 "치골·좌골"을 "두덩뼈·궁둥뼈(좌골)"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원위부골절"을 "먼쪽부위 골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근위부골절"을 "몸쪽부위 골절"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며, 같은 란 제12호 중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을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하고, 같은 호 7급의 상해 내용란 제2호 중 "내과골 또는 외과골"을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굴곡골절"을 "굴곡(굽히기)골절"로 하고, 같은 호 8급의 상해 내용란 제1호 중 "신전골절"을 "폄골절"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쇄골"을 "빗장뼈"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비골(다리)"을 "종아리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늑골"을 "갈비뼈"로 하고, 같은 호 9급의 상해 내용란 제1호 중 "극상돌기"를 "가시돌기"로, "횡돌기골절"을 "가로돌기 골절"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노뼈 골두골"을 "노뼈머리"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염좌"를 "삠"으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늑골"을 "갈비뼈"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염좌와"를 "삠과"로 하며, 같은 호 10급의 상해 내용란 제2호 중 "손허리뼈 지골 간 관절 탈구"를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지골간) 관절 탈구"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염좌"를 "삠"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불완전골절[비골(鼻骨)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을 "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11급의 상해 내용란 제1호 중 "염좌"를 "삠"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염좌"를 "삠"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비골(코)"을 "코뼈"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9급의 신체장애란 제3호 중 "반맹증·시야협착"을 "한쪽시야결손(반맹증), 시야가 좁아지거나"로 하고, 같은 호 12급의 신체장애란 제5호 중 "쇄골·흉골·늑골·어깨뼈"를 "빗장뼈·복장뼈(흉골)·갈비뼈·어깨뼈"로 하며, 같은 호 13급의 신체장애란 제2호 중 "반맹증"을 "한쪽시야결손"으로, "시야협착"을 "시야가 좁아지거나"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손가락 말단"을 "손가락 끝부분"으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제1지관절"을 각각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한다.

별표 7 검사 설비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버니어켈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조도계”를 “밝기측정기”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설비의 등록기준란 3)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하고, 같은 란 7) 중 “조도계”를 “밝기측정기”로 하며, 같은 란 9) 중 “멀티테스터”를 “전기회로시험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설비의 등록기준란 3)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하며, 같은 란 7) 중 “조도계”를 “밝기측정기”로 하고, 같은 란 9) 중 “멀티테스터”를 “전기회로시험기”로 한다.

별표 11 제2호 검사설비의 인력 및 설비기준란 다목 중 “버니어켈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하고, 같은 란 사목 중 “조도계”를 “밝기측정기”로 한다.

제27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본문 중 “절토사면(切土斜面)”을 “절토사면(깎기비탈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파이핑(piping)”을 “파이핑(piping: 흙·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염해(鹽害)”를 “염해(鹽害: 염분 피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절토·성토 사면”을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8호 제2종시설물란의 2) 중 “절토부”를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14호 단서 중 “선하역사”를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로 한다.

별표 4 제4호의 주요부분란 중 “여수로부분”을 “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 부분”으로 한다.

별표 10 제9호 중 “제체”를 “댐 본체”로 한다.

제278조(「시·도경제협의회규정」의 개정)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79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바목 중 “조제유류(調製乳類)”를 “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오도하거나 오인하게”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관능검사(官能檢査)”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한다.

제280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능검사(官能檢査)”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한다.

제281조(「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7호 중 “광독성(光毒性)”을 “광독성(光毒性: 빛에 의한 독성 반응성)”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82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2제5호 중 “목탄”을 “숯”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 중 “목탄”을 “숯”으로 한다.

제283조(「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284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85조(「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흑판면의”를 “칠판면의”로 한다.

제286조(「약사법 시행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제28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1천500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물혹(뇌의 경막하강에 약체가 고이는 것),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뇌에 충격이 가해져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축삭이 손상되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상처 등 물렁조직(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팔다리와 몸통의 물렁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위팔뼈목 골절과 위팔뼈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 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목뼈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척골)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 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8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자는 수술의 수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정강이뼈(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족근골) 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발목발허리(Lisfranc, 족근중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 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쪽 안구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15. 경추궁의 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과부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개의 힘줄)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뼈가 어긋남)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된 부상), 괴사상처 등으로 물렁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상해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7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발뒤꿈치뼈(종족골) 골절 4. 위팔뼈몸통 골절 5. 요골 원위부[콜리스 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 스미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늑골)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목말뼈 골절(목말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다리의 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치골)·궁둥뼈(좌골)·엉덩뼈(장골)·엉치뼈(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400만원	1. 소아의 팔(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 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뼈가 있는 자리(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치골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에 필요한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위팔뼈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돌기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내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1. 안면부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상악골), 아래턱뼈(하악골), 잇몸뼈(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80만원	1. 척주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근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 골절(목말뼈·발꿈치뼈(종골)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염좌(삠),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 간 관절 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개 또는 12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염좌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폄근힘줄) 파열 7. 9개 또는 10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2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뼈 골절·탈구 및 염좌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4개 또는 5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60만원	1.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2개 또는 3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6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 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7 제3호 4급의 상해내용란 제7호 중 “족근중족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호 6급의 상해내용란 제5호 중 “척주”를 “척주(등골뼈)”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상해내용란 제8호 중 “족근중

족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假關節)”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며, 같은 호 8급의 상해내용란 제2호 중 “척주”를 “등골뼈”로 하고, 같은 호 9급의 상해내용란 제3호 중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을 “한쪽시야결손(반맹증)·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으로 하며, 같은 호 11급의 상해내용란 제6호 중 “척주”를 “등골뼈”로 하고, 같은 호 12급의 상해내용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하며, 같은 호 13급의 상해내용란 제2호 중 “반맹증”을 “한쪽시야결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4호 중 “중수지 관절”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중족지 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로 한다.

제288조(「어업·양식업등록령」의 개정) 어업·양식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이기등록(移記登錄)을 하였다는”을 “옮겨 썼다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불시기”를 각각 “지급시기”로 한다.

제289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포장”을 “절토(땅깎기)·성토·정지(땅고르기)·포장”으로 한다.

제290조(「어촌·어항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조위(潮位)”를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로 한다.

제291조(「에너지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2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요로(燎爐)”를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로 한다.

별표 4 제1호거목 중 “조도계”를 “조도계(밝기측정기)”로 한다.

제29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가목1) 중 “결행”을 “미운행”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6호거목 중 “격벽시설”을 “칸막이벽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1) 중 “결행”을 “미운행”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8호하목 중 “격벽시설”을 “칸막이벽시설”로 한다.

제294조(「여권법 시행령」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신원정보면”을 “개인정보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판에 계류 중인”을 “재판이 진행 중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판에 계류 중인”을 “재판이 진행 중인”으로 한다.

제295조(「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96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97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을 “절토(땅깎기)·성토(盛土)·정지(땅고르기)·포장(鋪裝)”으로 한다.

제298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9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00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점검 분야란 산업위생 및 생물의 물적 장비 요건란 중 “조도계”를 “조도계(밝기측정기)”로 한다.

제301조(「연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사구 식생(砂丘 植生)”을 “사구 식생(砂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으로 한다.

제302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총회에 부의하고자”를 “총회의 회의에 부치고자”로 한다.

제303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6호나목3)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304조(「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의 개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선박”을 “해당 군함 또는 선박”으로, “공해대”를 “공해대(公海帶)”로 한다.

제305조(「예비군법 시행령」의 개정)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호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별도 1 제2호 제목 및 본문 중 “명찰”을 각각 “이름표”로 하고, 같은 별도 제3호나목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제306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나목3) 중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을 “바로 위 수직면”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라목 중 “설계축중”을 “설계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나목 중 “이격거리는”을 “간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라목 중 “이격거리는”을 “간격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나목 본문

중 “이격거리는”을 “간격은”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이격거리를”을 “간격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이격거리를”을 “간격을”로 한다.

별표 4 표 중 “리벳”을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으로 한다.

제307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심도증가”를 “깊이 증가”로 한다.

제308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8호 중 “시청각교육기재”를 “시청각교육 기자재”로 한다.

제47조제2호 중 “관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09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10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차주”를 “차관 제공자”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안건이 부의된”을 “안건이 부쳐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다목 중 “호스팅”을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회무를 통할”을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311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1) 단서 및 2) 단서 중 “수개”를 각각 “여러 개”로 한다.

제312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폐직 또는 감원으로 인하여”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줄어”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병과할”을 “병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병과할”을 “병행할”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 중 “폐직되거나”를 “없어지거나”로, “과원(過員)이 된

때”를 “정원이 초과된 경우”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도과하는”을 “지난”으로 한다.

제313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9호 중 “개폐”를 “개방 또는 폐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계좌대월”을 “계좌대월(대신 지급)”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수불금”을 “출납금”으로 한다.

제314조(「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의 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15조(「우편법 시행령」의 개정)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제1호 전단 중 “피복대여”를 “의복대여”로 한다.

제316조(「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원본(元本)”을 “원금”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17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자망”을 “유동성그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채낚기”를 “채낚기(낚시로 채어 낚는 어업)”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안강망”을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함정어구)”으로 한다.

제318조(「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중 “이표”를 “이표(이자 증표)”로 한다.

제31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노형”을 “노형(爐型)”으로 한다.

제320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호협의회에 부의될”을 “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321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호 중 “기밀 또는 수밀”을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로 한다.

제86조제2호 중 “(폐기선원은 제외한다)”를 “[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노형”을 “노형(爐型)”으로 한다.

제322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323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주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정선명령”을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으로 한다.

제324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성상”을 “성상(性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18호 본문 중 “지육”을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1) 중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를 “영상초음파시험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초음파탐상시험기”를 “초음파시험기”로 한다.

제325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목”을 “편철항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이기”를 “이기(옮겨 작성)”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갱정”을 “경정(고침)”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갱정”을 “경정”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갱정”을 “경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41조 중 “주말하여야”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한다.

제42조 중 “갱정”을 각각 “경정”으로, “주말하여야”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갱정등록)”을 “(경정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갱정”을 각각 “경정”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편철필증)”을 “(편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편철필증”을 “편철확인증”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편철필증”을 “편철확인증”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전사”를 “전사(베껴 작성)”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주말하여야”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주말하여야”를 각각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주말하여야”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주말하여야”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말하고”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수개”를 “여러 개”로, “주말하여야”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주말하여야”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로 한다.

제326조(「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제8호 및 제9호 중 “지불수단”을 각각 “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불수단”을 각각 “지급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불수단”을 “지급수단”으로 한다.

제327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원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점도(動粘度)”를 “운동점성계수”로 하고, “동점도가”를 “운동점성계수가”로 한다.

제328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조도(照度)”를 “조도(밝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위성항법장치(GPS)를”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을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추월하려는”을 “앞지르기하려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하거나”를 “앞지르기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종(號鐘)”을 “호종(선박 위치 알림 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추월할 때에는”을 각각 “앞지르기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2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한다.

제330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1호 구성명세란의 라목 중 “피복비”를 “의류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성명세란 중 “피복비”를 “의류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구성명세란 중 “피복비”를 “의류비”로 한다.

제331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32조(「의료기기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33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1조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4조 중 “종류와 제식 및 착용”을 “종류·형태·규격 및 착용”으로 한다.

제334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335조(「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지(失地)”를 “잃어버린 땅”으로 한다.

제336조(「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337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서의 분류 및 접수·발송

제19조제2항제1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38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인체

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장막

별표 1 제1호나목1)라) 중 “피복”을 “의복”으로 한다.

제339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34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제35조의3제1호 및 제2호 중 “시기·종기”를 각각 “시작일·종료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4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7호 중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로 하고, 같은 표 6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5호 중 “척주”를 “척주(등골뼈)”로 하며, 같은 표 7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8호 중 “족근중족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며, 같은 표 12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13호다목 중 “사지”를 “팔다리”로 한다.

제34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나목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32조제2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60조제2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76조의5제4항제2호나목 중 “소송계류”를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로 한다.

제3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342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염생산업(鹽生産業)"을 "소금생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염생산업"을 "소금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염생산업인"을 "소금생산업인"으로, "염생산업"을 "소금생산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입식일부터"를 "들인 날짜로부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염해(鹽害)" "염해(鹽害: 염분 피해)"로, "심도(深度)"를 "깊이"로 하고, 같은 호 다목2)가) 중 "대파(代播)"를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로 하며, 같은 목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나) 중 "묘삼대(苗蔘代)"를 "묘삼대(苗蔘代: 파종 후 일년 남짓 자란 어린 인삼의 대금)"로, "종균대(種菌代)"를 "종균대(種菌代: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등의 대금)"로 하고, 같은 호 라목4)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입식비"를 "입식비(양식시설에 새로운 수산물을 들여놓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2)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 중 "치어(稚魚)"를 "치어(어린물고기)"로 한다.

제343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사목 중 "임시저류지"를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로 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내수배제(內水排除)"를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활·음용수"를 "생활수·먹는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수담수화"를 "해수민물화"로 한다.

제55조제5호 중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방설"을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로 한다.

별표 2 기능 6의 표 업무기능란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344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훈격"을 "포상의 등급"으로 한다.

제345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46조(「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도(輕度)”를 “가벼운”으로 한다.

제347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호안”을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공동구”를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1의3의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2호 중 “공동구(共同溝)”를 “공동구”로 한다.

제348조(「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의 개정)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정사항”을 “정해진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정사항”을 “정해진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정사항”을 “정해진 사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소정사항”을 “정해진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계인(契印)”을 각각 “계인(걸침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계인(契印)”을 각각 “계인(걸침도장)”으로 한다.

제349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시작품제작비”를 “시험제품제작비”로 한다.

제35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굴착”을 “굴착(땅파기)”으로 한다.

제30조제4호 단서 중 “정압조정실(定壓調整室)”을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로 한다.

제351조(「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굴착”을 “굴착(땅파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원(諸元)”을 “제원(諸元: 해당 시설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으로 한다.

제352조(「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제6호 중 “총회에 부의할”을 “총회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의8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3조의2 중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를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53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 중 “공동구”를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4) 중 “반송설비공사”를 “운송설비공사”로, “전동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돌라, 삭도”를 “전동 소형물품 운반용 승강기, 권상용(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용도) 모터, 궤도, 운반차량, 컨베이어, 공조(덕트・시스템・설비), 곤돌라, 케이블카”로, “운반하는 반송용”을 “이동하게 하는 운송용”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서지(surge)”를 “서지보호설비[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전기공사의 예시란의 1) 중 “(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을 “[발전기, 변압기, 큐비클(전기기기, 수전・변전 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물),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착식”을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으로 한다.

제354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를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로 한다.

별표 1의7 제3호 요건란의 나목 중 “절연내력(絶緣耐力)”을 “절연내력(내전압)”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절연유 산가 측정기(절연유의 산화 정도를 분석하는 기기): 1대

제355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제1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4호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안분(按分)하여”를 “비율대로 나눠”로 한다.

제37조의5제2항제1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356조(「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핸드홀”을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로 한

다.

제9조제3호 중 “안벽·부교”를 “안벽(부두벽)·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로 한다.

제357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터빈”을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보유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절연저항 측정기(500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1천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형 전류계(클램프미터)	3
고압·특고압 검전기	3
저압 검전기	3
마이크로미터	3
회로시험기(멀티테스터)	3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3
조도계(밝기측정기)	1
절연저항 측정기(500볼트)	1
절연저항 측정기(1천볼트)	1
절연저항 측정기(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형 전류계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저압 검전기	1
마이크로미터	1
회로시험기	1
버니어캘리퍼스	1
조도계	1

제358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회(灰) 처리장”을 “재처리장”으로 한다.

제359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예산수지”를 “예산수입·지출”로 한다.

제360조(「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라목 중 “증적(證迹)을”을 “관련 정보를”로 한다.

제36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9제1항제2호나목 중 “인영(印影)”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362조(「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통수(通水)”를 “개방”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나목 중 “등록필증”을 “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363조(「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4면 제6호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제364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급전선(給電線)”을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으로 하

고, 같은 조 제7호 중 “반파다이폴”을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설해”를 “눈피해[雪害]”로 한다.

제36조제5항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37조제3항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앙각(仰角)”을 “상향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앙각”을 “상향각”으로 한다.

제74조제3호 중 “부하(負荷)에 가하여”를 “공급하여”로 한다.

제109조제1호 중 “촬영한 정면 탈모”를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6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가목 중 “(레이다·트랜스폰더·거리측정기·전파고도계)”를 “[레이다·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거리측정기·전파고도계]”로 한다.

별표 14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서지(surge)”를 “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로 한다.

6. 흡수클램프(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방출되는 최대 무선 주파수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

7. 전자기 클램프(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전자기를 측정하는 기기)

별표 19 제2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365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대·개체공사”를 “교체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대·개체하는”을 “교체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대·개체되는”을 “교체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개착식”을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을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임”을 각각 “임금”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통신 설비 공사의 공사의 종류란 통신선로 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고, 같은 표의 구분란 방송 설비 공사의 공사의 종류란 방송전송·선로설비 공사의 공사의 예시란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며, 같은 표의 구분란 기타 설비 공사의 공사의 예시란 중 “서지설비”를 “서지보호설비(전류·전압 등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이로부터 시설 등을 보호하는 설비)”로 한다.

제366조(「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367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7제3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66조의9제1항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별표 6의 매체구분란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368조(「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369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70조(「정부청사관리규정」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행형시설”을 “형 집행시설”로 한다.

제371조(「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격(勳格)”을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으로 한다.

제6조 중 “서훈”을 “훈장·포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장(綬章)”을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으로, “수치(綬幟)”를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로 한다.

제372조(「정치어업권보상규정」의 개정)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획고”를 각각 “어획량”으로 한다.

제373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질병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란 중 “상세불명”을 “상세불명(원인을 알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질병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란 중 “개두술”을 “머리뼈 절개술”로, 같은 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374조(「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개호비”를 각각 “간병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할인법(單割引法)”을 “단리할인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의 의료지원금 지급의 검토사항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37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 중 “외자”를 각각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376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5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6조제15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43조제7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3조제5항 본문 중 “퇴비사”를 “퇴비저장시설”로 한다.

제81조의2제1호 중 “폐질”을 “장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해·풍해”를 “눈피해[雪害]·바람으로 인한 피해”로 한다.

제99조의4제7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6조의6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감안할”을 각각 “고려할”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음용되는”을 “마실 수 있는”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1호다목 중 “호스팅”을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

의 서비스)”으로 한다.

제116조의30제1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6조의31제16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116조의34제6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4) 중 “모듈”을 “모듈(module: 전체·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5) 중 “시뮬레이션(모사)”을 “모의실험”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4) 중 “시인성”을 “시인성(視認性: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2) 중 “라우터(router)”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다목2) 중 “동정(identification)”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육종기술”을 “품종개량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나목8) 중 “심도”를 “깊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6)중 “터빈”을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4) 중 “탁질 물질”을 “이물질”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대상기술란 중 “600시간 침지 후”를 “600시간 담근 후”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대상기술란 중 “단조”를 “단조(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나목2) 중 “위성탑재체”를 “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로 하고, 같은 목 3) 중 “페어링”을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다목7) 중 “천공”을 “구멍 뚫기(천공)”로 한다.

제377조(「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인영(印影)”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우송하는”을 “우편으로 부치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독거인(獨居人)이거나”를 “혼자 거주하거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온라인망”을 “전산망”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중 “우송하여 줄 것을”을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제1호 중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을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제2호 중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을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를”로 한다.

제378조(「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설비기준의 지정요건란 나목 중 “멀티미터”를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RPM미터”를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로 하며, 같은 란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아목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하며, 같은 란 차목 중 “내외경퍼스”를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로 한다.

사.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200mm) 5대 이상

별표 3의 보수설비의 등록기준란 가목 중 “갭게이지”를 “갭게이지(틈새측정기)”로 하고, 같은 란 자목 중 “멀티테스터”를 “전기회로시험기”로 하며, 같은 란 차목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한다.

제379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상회하는”을 각각 “웃도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림대”를 “방음림(소음막이숲)”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라목 단서 중 “수림대”를 “방음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림대를”을 “방음림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문주(門柱)”를 “문주(문기둥)”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를 각각 “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석고플라스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을 “날려 흩어지지 않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집수정등”을 “집수정(물저장고) 등”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경질염화비닐관”을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용수의”를 “먹는물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음용수외의”를 “먹는물 외의”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중 “이격하여”를 “떨어뜨려”로 한다.

제380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별표 제3호바목 중 “연부연납”을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제2호가목 중 “복표발행업”을 “복권 발행업”으로 한다.

제381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4호 중 “권종별”을 각각 “종류별”로 한다.

별표 2 제4호 단서 중 “정압조정실을”을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로 한다.

제382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공동구”를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로 한다.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공여구역 면적비율의 산정방식란 중 “직선보간”을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으로 한다.

별표 4 27221의 업종명란 중 “연신제품”을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 29119의 업종명란 중 “터빈”을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수납일부인”을 각각 “수납날짜도장”으로 한다.

제383조(「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의2가목 및 다목 중 “현장실사”를 각각 “현장 실제조사”로 한다.

제384조(「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현장 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현장실사”를 “현장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현장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현장실사”를 각각 “현장 조사”로 한다.

제385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86조(「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권종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권종별수”를 “종류별 수”로 한다.

제38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9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권종별(券種別)”을 “채권의 종류별”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권종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388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부의”를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89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1호가목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2 제3호 표 인건비의 산정 명세란 중 “노임(勞賃)”을 “임금”으로,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390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등사”를 각각 “복사”로 한다.

제78조의3제1호 중 “등사”를 “복사”로 한다.

제391조(「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치·분합”을 “폐지·설치·분할·통합”으로, “개폐”를

“개편·폐지”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개폐”를 “개편·폐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폐치·분합”을 “폐지·설치·분할·통합”으로, “개폐”를 “개편·폐지”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으로 한다.

제392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을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본문 중 “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을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을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으로 한다.

제393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개폐”를 “개편·폐지”로, “폐직·과원 등의”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으로 한다.

제394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개폐”를 “개편·폐지”로, “폐직·과원등의”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로 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폐직 또는 과원이 된”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을종란 가목 중 “어로지도”를 “고기잡이지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병종란 나목 중 “종축생산”을 “종축(씨가축)생산”으로, “사양(飼養)관리”를 “사양(기르기)관리”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중 “터널굴착”을 “터널굴착(땅파기)”으로, “낙반(落磐)”을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으로, “낙사상(落死傷)”을 “낙사상(落死傷: 떨어져 죽거나 다침)”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병종란 마목 중 “연돌(煙突)”을 “굴뚝”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 중 “(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구멍뚫기(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2호 비고 제1호 중 “연륙교(連陸橋)”를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접적지역”을 “적과 접촉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접적지역”을 각각 “적과 접촉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95조(「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1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7조제1항제6호의3 단서 중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직류란 중 “계리운영”을 “회계처리운영”으로 한다.

제396조(「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크(dock)시설”을 “독(dock)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크(dock)시설”을 “독시설”로, “도크,”를 “독,”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소인하여야”를 “지움도장을 찍어야”로 한다.

제49조제4항 본문 중 “소인하여야”를 “지움도장을 찍어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153호 중 “음용”을 “먹는물용”으로 한다.

제397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를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로 한다.

제398조(「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적시하여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로 한다.

제39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라목 중 “접적지역”을 “접경지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중 “외자(外資)시설”을 “외국자본시설”로 한다.

제71조의3제2항 중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한다.

제82조제2호 중 “전석(甎石) 쌓기”를 “벽돌쌓기”로 한다.

제400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40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사무직원의 겸무)”를 “(사무직원의 겸임 업무)”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잔고증명”을 “잔액증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의 시·군·자치구 사무란 3) 중 “취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장제보호비”를 “장례보조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의 시·군·자치구 사무란 1) 중 “계도”를 “교육”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시·도사무란 4) 중 “시달”을 “통보”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시·도사무란 1) 중 “시달”을 “통보”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마목의 시·도사무란 3)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402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1호 중“연승어업”을 “연승어업(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용제대리점”을 “용해제대리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 중 “용제판매소”를 “용해제판매소”로 하고, 같은 표 제109호 중 “등록필증”을 “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403조(「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2호 중 “부잔교(浮棧橋)”를 “부잔교(浮棧橋: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로, “부선거(浮船渠)”를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설비)”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0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

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

제40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소인(消印)하고”를 “접수 도장을 찍고”로 한다.

제405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로 한다.

제406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회수하는 어음)

제5조의2제1항제2호가목3), 5)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가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407조(「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현수교(懸垂橋)”를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로, “사장교(斜張橋)”를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4) 중 “위성항법장치(GPS)”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다목2) 중 “악천후”를 각각 “거친 날씨”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나목3) 중 “위성항법장치(GPS)”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2호 중 “반발경도”를 “반발 경도(단단한 정도)”로 한다.

제408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용수(飮用水)”를 “먹는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음용수로”를 “먹는물로”로 한다.

1. 먹는물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음용수의”를 각각 “먹는물의”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409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집수정(集水井)”을 “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410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목”을 “편철항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기”를 “이기(移記)”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편철필증)”을 “(편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편철필증”을 각각 “편철확인증”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편철필증”을 “편철확인증”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개”를 각각 “여러 개”로 한다.

제62조 전단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411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토장(捨土場)”을 “사토장(흙 처리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8호 중 “절토·성토 사면”을 “절토사면(깎기비탈면)·성토사면(쌓기비탈면)”으로 한다.

제412조(「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 가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급의 상해부위란 제5호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고, 같은 표 2급의 상해부위란 제3호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며, 같은 표 6급의 상해부위란 제12호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고, 같은 표 7급의 상해부위란 제9호 중 “안면두개골”을 “얼굴머리뼈”로, “안면 두개골”을 “얼굴 머리뼈”로 하며, 같은 표 8급의 상해부위란 제12호 중 “안면 두개골”을 “얼굴 머리뼈”로 한다.

제413조(「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의 개정)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을 “체신관서현금출납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현금수불”을 “현금출납”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불상”을 “출납상”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체신관서소속 현금수불”을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수불”을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으로 한다.

제414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중 “잔고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한다.

제415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가목 중 “집수정(集水井)”을 “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제416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계류소”를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자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

제14조의2 중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를 “조현정동장애”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한다.

제15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조수류”를 “조수류(새·짐승)”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수불량”을 “출납량”으로, “천공의”를 천공(구멍뚫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소산”을 “소산(疏散: 분산시킴)”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굴진작업”을 “굴진(굴 파기)작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33조제7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한다.

별표 3 제1호 권총의 공작설비의 특정설비란 중 “심공드릴머시인”을 “심공드릴머신(구멍 뚫는 기계)”으로 하고, 같은 호 권총의 공작설비의 일반설비란 중 “드릴머시인”을 “드릴머신”으로 하며, 같은 호 권총의 검사설비란 중 “경도시험기”를 “경도(단단한 정도) 시험기”로 하고, 같은 호 소총의 공작설비의 특정설비란 중 “심공드릴머시인”을 “심공드릴머신”으로 하며, 같은 호 소총의 공작설비의 일반설비란 중 “드릴머시인”을 “드릴머신”으로 하고, 같은 호 기관총의 공작설비의 특정설비란 중 “심공드릴머시인”을 “심공드릴머신”으로 하며, 같은 호 기관총의 공작설비의 일반설비란 중 “드릴머시인”을 “드릴머신”으로 하고, 같은 호 소구경포의 공작설비의 특정설비란 중 “심공드릴머시인”을 “심공드릴머신”으로 하며, 같은 호 소구경포의 공작설비의 일반설비란 중 “드릴머시인”을 “드릴머신”으로 하고, 같은 호 중구경 및 대구경포의 공작설비의 일반설비란 중 “드릴머시인”을 “드릴머신”으로 하며, 같은 호 엽총·산업용총의 공작설비의 특정설비란 중 “심공드릴링머

신”을 “심공드릴링머신(구멍 뚫는 기계)”으로 하고, 같은 호 도검의 공작설비의 특정설비란 중 “단조설비”를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설비”로 하며, 같은 호 도검의 공작설비의 일반설비란 중 “드릴머시인”을 “드릴머신”으로 하고, 같은 호 석궁의 공작설비의 일반설비란 중 “그라인더”를 “그라인더(절삭·연마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총포의 공작설비란의 일반설비(이상)란 중 “드릴머시인”을 “드릴머신”으로, “구라인다”를 “그라인더”로, “바이스”를 “핸드 바이스(hand vise: 가공물 고정을 위한 기구)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1)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표 6의 화약류의 종류란 중 “약협”을 “화약통”으로 한다.

별표 16의2 제1호의 장애 종류란 중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분열형 정동장애”를 “조현정동장애”로 한다.

제417조(「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전단 중 “채포(採捕)”를 “채취·포획”으로 한다.

제418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우지(牛脂)”를 “우지(쇠기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돈지(豚脂)”를 “돈지(돼지기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란액(알의 모든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첨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

2. 난황분(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만든 것)

3. 난백분(알의 흰자를 분말로 만든 것)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소 등의 제1 위에 가스가 급성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증상)

별표 1 제3호가목 중 “가금류는”을 “가금(식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류)은”으로 한다.

제419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교제·회합한”을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으로, “교제·회합의”를 “교제·모임의”로 한다.

제420조(「치안행정협의회규정」의 개정)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그 회무를 통할한다”를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21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22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획지(劃地)”를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의 4) 본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23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24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425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8호 중 “외자유치”를 “외국자본유치”로 한다.

제426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27조(「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품목번호 847989, 90, 99의 품명란 중 “시비장치”를 “거름주기(시비)장치”로 한다.

제428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호예수”를 “보호예수(保護預受: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가목3) 중 “역외탈세(域外脫稅)”를 “국외 탈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29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30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431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32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2호가목 중 “슬라브”를 “슬래브”로 한다.

제433조(「하천법 시행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중 “명기한”을 “정한”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 단서 중 “토석·사력”을 “토석(土石)·사력(자갈)”으로 한다.

제434조(「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43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노임단가”를 각각 “건설임금단가”로, “정부노임단가통계에”를 “정부임금단가통계에”로, “정부노임단가통계도”를 “정부임금단가통계도”로 한다.

제436조(「학술원사무국 직제」의 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관인관수”를 “관인의 보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437조(「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38조(「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39조(「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업수행의 지침시달)”을 “(사업수행의 지침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440조(「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채의 종류별 금액

제17조의4제1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41조(「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경주마의 출주기준)”을 “(경주마의 출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주기준”을 “출전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출주마”를 “출전마”로, “예시장”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출주”를 “출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출주마”를 “출전마”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출주마”를 “출전마”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출주정지”를 “출전정지”로 한다.

제442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43조(「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권종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444조(「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권종별”을 각각 “종류별”로 한다.

제445조(「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46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47조(「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48조(「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권종(券種)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권종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449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50조(「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권종별 액면금액”을 “종류별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권종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451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을 “종류별 금액”으로 한다.

제452조(「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53조(「항공보안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적(換積)”을 “환적(옮겨 싣기)”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호 중 “요인(要人)경호업무”를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로 한다.

제454조(「항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후불로”를 “후지급으로”로 한다.

제455조(「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56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2호 중 “시작품(試作品)”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457조(「항만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호안”을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벽(岸壁)”을 “안벽(부두 벽)”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선석(船席)운영”을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의 규모”로 한다.

제458조(「항만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용지도(用地圖)”를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로 한다.

제459조(「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의 개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각 장의 철목(綴目)에”를 “편철한 각 장 사이에”로 한다.

제460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비고 제4호 중 “척수(隻數)”를 “선박 수”로 하고, 같은 비고 다목 중 “전보(塡補)”를 “전보(塡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함)”로 한다.

제461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류(旗旒) 신호”를 “기류신호(깃발신호)”로 한다.

제462조(「해양경비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투색총(投索銃)”을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으로 한다.

제463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어로”를 “조업”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경찰복제 및 피복”을 “경찰제복 규정 및 의복”으로 한다.

제464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로도지(水路圖誌)”를 “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제465조(「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의 개정)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저서생물”을 “저서생물(低棲生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물)”로 한다.

제466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6항제2호 중 “가필하는”을 “고쳐 쓰는”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제1회 심판기일 전의 검사에의 입회)”를 “(제1회 심판기일 전의 검사에의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회할”을 “참관할”로 한다.

제46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벽(岸壁)”을 “안벽(부두 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용지도(用地圖)”를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로 한다.

제468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치어(稚魚)”를 “치어(어린물고기)”로 하고, “종패(種貝)”를 “종패(씨조개)”로 한다.

제469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시작품(試作品)”을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작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470조(「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2호 중 “제전”을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4호 중 “인공어초시설”을 “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8호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47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육성종(育成種)”을 “개량 품종”으로 한다.

제472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저질(底質)”을 “밑바닥 퇴적물(저질)”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오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별표 3 제2호 폐기물 종류란 중 “분뇨처리오니(汚泥)”를 “분뇨처리오니(오염된 침전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 중 “Plate Reader”를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로 한다.

1)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불꽃 이온화 집출기

2)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선택 질량 분석기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질량 분석기

4) 방사능 측정 계수기

별표 15 제4호다목 중 “스파 부이(spar buoy)”를 “원기둥 부표”로 한다.

제473조(「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을 “외화획득비율”로 한다.

제474조(「해외이주법 시행령」의 개정)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제475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굴진탐사(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

제476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제47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5호나목 중 “국제반신우표권”을 “국제회신우표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다목 중 “계기별납”을 “계기별납(요금 표시기에 의한 일괄 요금 별도 납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구거”를 “구거(溝渠: 도랑)”로, “유지(溜池)”를 “유지(溜池: 웅덩이)”로 한다.

제45조제8항제4호 및 제4호의2 중 “제증명”을 각각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478조(「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79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개”를 각각 “여러 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안하여야”를 “고려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80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친수(親授)”를 “직접 수여”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6호 중 “폐치(廢置)·분합”을 “폐지·설치·분할·통합”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0호 중 “소산(疏散)”을 “소산(疏散: 분산시킴)”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48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482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인영(印影)”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나목 단서 중 “천공(穿孔)방식”을 “구멍뚫기(천공)방식”으로 한다.

제32조 중 “병기(倂記)하여”를 “함께 적어”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를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483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절토·성토”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로 한다.

제484조(「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85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총공급고”를 “총공급량”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총공급고”를 “총공급량”으로, “총공급고를”을 “총공급량을”로 한다.

제48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계도활동”을 “지도활동”으로 한다.

제487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검안서(檢案書)”를 “시신 검사의견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1급 신체장애란의 제5호 중 “반신불수”를 “왼쪽 또는 오른쪽이 마비”로 하고, 같은 표 4급 신체장애란의 제7호 중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을 “발목발허리 관절”로 하며, 같은 표 7급 신체장애란의 제8호 중 “족근중족 관절”을 “발목발허리 관절”로 하고, 같은 표 7급 신체장애란의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며, 같은 표 9급 신체장애란의 제3호 중 “시야협착”을 “시야 좁아짐”으로 하고, 같은 표 12급 신체장애란의 제5호 중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하며, 같은 표 13급 신체장애란의 제2호 중 “시야협착”을 “시야 좁아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

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13호나목 중 "타각적(他覺的)"을 "타각적(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지"를 "팔다리"로 한다.

제488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호가목 중 "화재성상"을 "화재의 성질·상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성상"을 "성질·상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6)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안전헬멧"을 "안전모"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1) 및 2) 중 "안전헬멧"을 각각 "안전모"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3)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89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 중 "슬러지"를 "침전물(슬러지)"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5호 중 "해수담수화"를 "해수민물화"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 중 "탑재체(搭載體)"를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수종, 물주머니(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된 부상)·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 목 부위 골절과 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앞·뒤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닿는 부분)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뼈 융기사이결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 잡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자뼈 간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관절(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앞·뒤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 찢긴상처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의 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오목을 포함한다) 2. 정강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어깨 관절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 골절 7. 팔꿈치관절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 갈래근, 넓적다리 두 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의 안쪽·바깥쪽 인대, 앞·뒤 십자인대, 안쪽·바깥쪽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뒤꿈치뼈 골절 4. 위팔뼈 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 스미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 수근 관절면, 노뼈 먼쪽뼈끝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목말뼈 골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궁둥뼈·엉덩뼈·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위·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손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물주머니,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 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엉치엉덩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 목, 봉우리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5. 봉우리빗장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얼굴 찢긴상처(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이틀),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극돌기), 가로돌기(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세 부분으로 된 뼈),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

		가슴,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뼘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뼘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뼘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뼘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지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몸의 왼쪽 또는 오른쪽의 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해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시야협착(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

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별지 3]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

상이등급	상이내용	지급금액(만원)
1급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000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밑 수종, 물주머니(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6. 고도의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뇌에 충격이 가해져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축삭이 손상되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위독한 상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상처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이)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이식술(피부·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시행한 상이	
	11. 위팔뼈목 골절과 위팔뼈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2급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1,000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이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이(48시간 미만의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이	
	7. 자뼈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상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3급	1. 위팔뼈목 골절	1,000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이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이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이(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이	
	13. 중증도의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쪽 안구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의 선골절(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이	
	17. 관절면을 침범한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4급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오목을 포함한다) 골절	900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개의 힘줄)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골절(뼈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화상, 좌상,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이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이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5급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900
	2. 발목관절 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이	
	3. 발꿈치뼈 골절	
	4. 위팔뼈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 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 스미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 수근 관절면, 노뼈 먼쪽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찢김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찢김상처)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창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몸통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이	
	13. 목말뼈 골절(목말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정강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이	
6급	1. 소아의 다리 장관골(다리의 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500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궁둥뼈·엉덩뼈·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상이	
	6. 두덩뼈 위·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물주머니,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이[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7급	1. 소아의 팔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500
	2. 족과절 안쪽 복사뼈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8급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이	240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 목, 봉우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1. 안면부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잇몸뼈,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9급	1. 척주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40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 부위 뼘,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뼘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이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0급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160
	2. 손바닥뼈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뼘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손가락뼈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1급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뼘	160
	2. 손가락뼈 골절·탈구 및 뼘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2급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이	80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3급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이	80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4급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이	80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 보다 한 급 높게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단순성 선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뼈가 어긋남)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지 4]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20조제4호나목 관련)

상이 등급	상이내용	지급금액 (만원)
1급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000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4. 외상 머리뼈 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물혹(뇌의 경막하강에 액체가 고이는 것),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6. 고도의 뇌 타박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상처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이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이식술(피부·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시행한 상이	
	11. 위팔뼈목 골절과 위팔뼈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상이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2급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1,000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어떤 신경증상이 없는 상이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이	
	7. 자뼈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 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상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3급	1. 위팔뼈목 골절	1,000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닿는 부분)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이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이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이[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관혈(觀血)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발목발허리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이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쪽 안구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의 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이	
	17. 관절면을 침범한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4급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관절융기 윗부분 및 융기사이오목을 포함한다) 골절	900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개의 힘줄) 골절 파열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골절(뼈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화상, 좌상,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이	
	9. 한쪽 눈의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한쪽 눈의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이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이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 십자인대,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5급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900
	2. 발목관절 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이	
	3. 발꿈치뼈 골절	
	4. 위팔뼈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 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 스미스골절(콜리스의 반대로서 아래 뼈 조각이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뺏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 수근 관절면, 노뼈 먼쪽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찢김상처)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창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몸통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이	
	13. 목말뼈 골절(목말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이	
6급	1. 소아의 다리 장관골(다리의 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500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大轉子部)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궁둥뼈·엉덩뼈·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상이	
	6. 두덩뼈 위·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물혹,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7급	1. 소아의 팔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500
	2. 족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	

	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8급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240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 목, 봉우리 및 어깨뼈부리돌기 포함)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烏口)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1. 안면부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잇몸뼈(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9급	1. 척주골(脊柱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40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주체 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관절 탈구, 손목뼈사이관절 탈구 및 먼쪽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0급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160
	2. 손바닥뼈와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와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각종 불완전골절(코뼈 골절·손가락 골절 및 발가락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1급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뺌	160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뺌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2급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	80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13급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	80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14급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	80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뼈가 어긋남)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로부터 하위 3등급(예: 등급이 가장 높은 상이 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지 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

		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 목, 봉우리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다리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

		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팔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다리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별지 6]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부상등급	보험금액	부상 내용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 머리뼈안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수종, 물주머니(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의 일종)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목 골절과 위팔뼈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복사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이뼈돌기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 잡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발허리뼈사이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돌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고리의 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과상부 및 융기사이오목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복사 골절 3. 목말뼈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뼈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뒤꿈치뼈 골절 4. 위팔뼈 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 스미스골절(콜리스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혈흉), 공기가슴증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창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목말뼈 골절(목부위는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궁둥뼈・엉덩뼈・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 머리 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물주머니,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물주머니,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고관절 탈구 5. 어깨 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우리빗장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어깨뼈 목, 관절융기, 견봉돌기 및 어깨뼈 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봉우리빗장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ㄹ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얼굴 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

		뼈 골절과 혈액가슴,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손목뼈사이 관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 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뻠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 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뻠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뻠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급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 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 급	5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뼈가 어긋나지 않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 ---------- --------- 사무----------.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생략)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의하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하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기타 공신력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설임금단가 ------- ---------- 건설임금단가 ---------- ---------- ---------- ---------- ----------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1. ---------- 지급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5. ---------- 지급하는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 ---------- 지급정지된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생 략)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② ----------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추백리(雛白痢)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2. 재판이 계속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開沓)·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2. ---------- 환토(흙바꾸기)하거나 객토(새 흙 넣기)----------개답(논을 고쳐 만듦)----------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5. ---------- ------ 성토(흙쌓기) ------
6. 삭 제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용도변경) ① ----------.
1.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兩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	1. ----------. ---------- 양쪽 기슭(양안) ----------

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가. ~ 마. (생 략) 2. ~ 11. (생 략) ②·③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2.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생 략)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생 략) 2의2. ~ 13. (생 략)	제19조(신고의 대상)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퇴비저장시설 -------- 다. (현행과 같음) 2의2. ~ 13. (현행과 같음)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⑤ (생 략)	---------- 고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 라. (생 략) 3.·4. (생 략) ③·④ (생 략)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나. ~ 라.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

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감안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고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생 략)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고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수불(受拂)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출납----------.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명확하게 적어----------.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및 세액	2. ----------지급한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①---------- ---------- ---------- ---------- 회의에 부치기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 ---------- ---------- 고려----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2. --------- 추정재무상태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2. ---------- --------. ---------- --------- 집수정(물저장고) ---------- ---------- ----------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2. ---------- 임금 ----------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생 략)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 ----- 고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 ---------- ----------.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1. ---------- ----------퇴비저장시설-- ---------- --------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7조(보증한도) ①·② (생 략)	제57조(보증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 ---------- ---------- ---------- -- 고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 ---------- ---------- ---------- ----------

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 명의 기재변경을 ----------.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 기재변경----------.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임금---------- -- 임금----------.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임금----------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② (생 략)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1. ------ 안전울타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 ----------

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 ----------. ---------- ---------- ---------- ---------- ---------- ------소년원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2. ---------- 추정재무상태표 ----------

검사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검사의 전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경향교류(京鄕交流),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4. ----- 수도권과 지방 교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생 략)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 접수·발송----------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생 략)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	4. ---- 접수·발송----------

항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생 략)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 접수·발송----------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 (생 략)	③ ~ (현행과 같음)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제3조(부상 및 장애 급여금) ---------- 부상 및 장애 급여금--.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 부상자 및 장애자----------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 부상자 및 장애자----------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 부상자 및 장애자----------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3조에 따른	제4조(부상 및 장애 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부상 및 장애 급여금---------- ---------- ---------- ---------- 부상 및 장애 급여금---------- ---------.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 ---------- 부상 및 장애 급여금---------- ---------- ---------- ----------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6.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 ---------- ---------- ---------- ----------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1. ---------- 굴착(땅파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2. ----------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 정압조정실(일정압력 유지·조정실)을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	3. ---------- 명확하게 적은 ----

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계획) ① (생 략)	제5조(교육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반지침 및 교육인원의 배정에 따라 연도개시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교육자의 선발계획	3. 교육 대상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학칙등) ① (생 략)	제17조(학칙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 또는 교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개정 또는 폐지----- ---------- ----------.
제20조의2(퇴학처분)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퇴학처분) ①---------- 교육 대상자-----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7. --------- 교육 대상자----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강령)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3. --- ---------- ---------- ---------- 존중으로써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6. ----------. ---------- 병행할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1. 법 제8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 ---------- 병행할 ----------.
2. 법 제8조제3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 ---------- 병행하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① (생략) ②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학칙으로 정하는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③ (생 략)	제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경무인사기획관) ① (생 략)	제5조의3(경무인사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접수·발송----------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제13조(경비국) ① (생 략)	제13조(경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지도	11. ----- 주요 인사 보호계획------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제18조(학장) ① (생 략)	제18조(학장) ① (현행과 같음)
②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총괄하고----------.
제20조(교수부) ① (생 략)	제20조(교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4. ---------- 교육용 기구 및 재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① ~ ③ (생 략)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총괄하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도서관) ① (생 략)	제25조(도서관) ① (현행과 같음)
②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 할 수 있다.	②---------- -- 겸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원장 및 교장) ① (생 략)	제28조(원장 및 교장)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 총괄하고----------.
제40조(지방경찰청장) ① (생 략)	제40조(지방경찰청장)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총괄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경무부) ① (생 략)	제46조(경무부) ① (현행과 같음)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2. ---------- 보관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접수·발송---------- ---------- ----------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 명확하게 적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설비·성형설비·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3. (생 략) ③·④ (생 략)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설비----------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 ----- 중등도(重等度)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3. ----------접수·발송----------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직무)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1. ---------- 접수·발송----------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27조(사무처) ① ~ ③ (생 략)	제27조(사무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1. ---------- 접수·발송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 ⑧ (생 략)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 호소(湖沼: 호수와 늪)----------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3. ---------- 절토(땅깎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털 스테이션: 3년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 략)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3. ---------- 고려하여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운영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여러 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존방법) ①·② (생 략)	제29조(보존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맨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차대조표 3. ~ 5. (생 략) ④ (생 략)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재무상태표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정지(整地: 땅고르기)---------- ---------- ----------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 ---------- ----------. 1. (현행과 같음) 2. ----------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④ ---------- 고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 고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7조(하자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	2. ----------

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전선 연결 ---------- ---- 입상(서 있는 상태) --- ---------- ----------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생 략)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겸임수당) ① ---------- 고려하여 ---------- ----.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 고려하여 ----------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생 략)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3. ---------- ---------- ---------- 겸하는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생 략)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 ---------- ---------- -------- 개정·폐지--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생 략)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 3. (생 략)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 1. ~ 3. (현행과 같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예산안(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생 략)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 1. (현행과 같음) 2. ----------추정재무상태표---------- ② (현행과 같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 14. (생 략) ② (생 략)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 ---------- 6.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개정·폐지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었을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개정·폐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 신설·개정·폐지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실기시험의 병과 등) ①·②(생 략)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①·②(현행과 같음)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1.·2.(생 략) 3. 팔 또는 다리의 근성(筋性)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 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3 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② ~ ④(생 략)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1.·2.(현행과 같음) 3. ---------- 근육------- ②~④(현행과 같음)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2.(생 략)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1.·2.(현행과 같음)

3. 장제(葬祭)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생 략)	3. 장례 ---------- -- 4. (현행과 같음)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생 략)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훈장·포장 수여 - -----.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보상) ---------- ---------- 시험제품----------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 ~ ⑤ (생 략)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생 략)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무기록 ----------. ⑦ (현행과 같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자율항목) ---------- ---------- ---- 고려하여 ----------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생략)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매립요청지의 갯벌·수리현상(水理現象) 및 저서생물(低棲生物)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영향을 줄이는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저서생물(低棲生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물) ----------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권리자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 ----------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호안(護岸)·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방파제·배수시설·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안벽(부두 벽)·소형선 부두·방파제·배수시설·공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 월 단위 또는 날짜 단위------------------.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2. -------------------- 옮겨심기-------------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 옮겨 심거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 월 단위 또는 날짜 단위--------. --

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2. ---------- 옮겨심기--------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 - 옮겨 심거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생 략)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2. --------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 ---------- ---- 수입·지출예산서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 (생 략)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예산수입·지출을 ---------- ----------.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생 략)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법인은 법 제11조제3항	② ----------

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 ---------- 수입·지출예산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실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 ---------- 수입·지출예산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제22조(회계원칙) ①----------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수입·지출상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1. ---------- 재무상태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생 략)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4. ----------

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 재판이 계속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험위원회) ① ~ ④ (생략)	제6조(시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 사무를 총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총괄----------.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위원장) ① ---------- 사무를 총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생 략)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총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차대조표	2. 재무상태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하며----------.
제20조(소장) ① (생 략)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총괄하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학생의 정원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각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생 략)	제3조(장학생의 정원등) ①---------- ---------- ---------- -- 고려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5.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5제3항·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제14조(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 여러 개----------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① (생략)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 ---------- 눌러찍은 ---------- --------. ---------- -- 구멍 뚫기 방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 (생 략)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보고----------.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1. (생 략) 22. 제34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신청 시 의견서의 상신에 관한 사무 2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1. (현행과 같음) 22. ---------- ---------- ---------- 보고----------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부의 간인) ---------- ---------- ---------- ---------- ---------- 편철항목---- ---------- -------.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 (생 략)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 ---------- 이기(移記)----------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신청서의 접수)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서의 접수) -------- ---------- ---------- ---------- ---------- ---------- ---. ---------- ---------- 여러개---------- ----------.

제46조(편철필증)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편철확인증) ①---------- ---------- ---------- ---------- 편철확인증---------- ----------.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 ----- 편철확인증---------- ----------.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① (생 략)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편철확인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수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여러 개---------- ---------- ---------- ---------- ---.
②1개 또는 수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②------ 여러 개---------- ----------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공항시설관리권이 수개인 경우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여러 개---------- ---------- ---------- ---------- 여러 개---------- ---------- ---------- ---------- ----------.
제63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수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3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 ---------- ---------- ---------- ---------- ---------- ---------- ----------. ---------- ----------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행위제한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토지를 굴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2. ---------- 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2. ---------- 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 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9. ---------- 접수·발송 ----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② (생 략)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5. (생 략)	1. ~ 45. (현행과 같음)
46.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46. ---------- 지급 ----------
47. ~ 107. (생 략)	47. ~ 107. (현행과 같음)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② (생 략)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	22. ---------- 위성

항법장치(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위치확인시스템(GPS) ------
23. ~ 96. (생 략)	23. ~ 96.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4. ---------- ---------- ------- 지급하는 -------- ---------- ---------- ---------- ---------- ---------- ----------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

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 지급한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를 총괄하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생 략)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②---------- ---------- ---------- ---------- ---------- 고려하여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생 략)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	②---------- ---------- ---------- ---------- ----------

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2. ---------- 고려한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① (생 략)	제77조(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 고려한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사무를 총괄하고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1. ---------- 참관 ----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 참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④ ----------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괄한다. ---------- ---------- ---------- ----------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 ---------- ---------- ---------- ---------- 고려하여 ---------- ----------.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 ---------- ---------- ---------- 고려하여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접수·발송----------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21조(직무) ----------.
1.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1. --------- 접수·발송----------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안전조치) ①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및 안전광주(安全鑛柱)의 설치	2. ----------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 및 안전광주[갱내외 주요시설(갱도포함)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부석(浮石) 또는 전석(轉石)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1. ----------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 또는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
2. 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2. ----------
가. 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인차(人車)의 진행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인차의 시운전·운반·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가. ----------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의 ---------- 사람 수송용 차량의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광주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2. ---------- 재무상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결산 보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보고) ----------. ----------.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1. ---------- 재무상태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생 략)	제16조(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원본(元本)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원금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8. ----------접수·발송 ----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제20조(총무과) ① (생 략)	제20조(총무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4. ----------접수·발송----------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고·납부) ① (생 략)	제7조(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함께 적고 ----------.
제8조(부과와 징수)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와 징수) ①---------- 함께 적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4. 인공팔다리----------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5. 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1. ----------대기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명확하게 적어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2. (생 략)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개정·폐지-- ----------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 ---------- ---------- ---------- ----------

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개정·폐지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개정·폐지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① (생 략)	제15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실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 ---------- ---------- ---------- ---------- ------- 현장 실제 조사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 ------- 현장 실제 조사 ---------- ----------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사·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 현장 실제 조사----------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1(산업위기대응특별지	제15조의11(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 ---------- ---------- ---------- ---------- ---------- ------ 현장 조사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3. ---------- ---------- ---------- ----------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가. ---------- ---------- ---------- ---------- ---------- 고려하여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에 관한 사무	5. ---------- 이관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에 관한 사무	5. ---------- 이관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④·⑤ (생 략)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6. ~ 13. (생 략) 제18조(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 19. (생 략) ② (생 략) 제24조(사무국) ① ~ ③ (생 략)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접수·발송---------- 6. ~ 13.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 ① ----------. 1. ---------- 접수·발송---------- 2.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접수·발송----------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 ---------- ---------- 시험제품 ------ ---------- ---------- ---------- ---------- --------. ---------- ---------- ---------- ---------- ----------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② ---------- ---------- ---------- 출판권 -------- ---------- ---------- ---------- ---------- ---------- ----------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생 략)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 ---------- ----------.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 ---------- ----------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 ③ (생 략)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	④ ---------- ---------- ---------- ----------

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 ---------- 전원(轉院)----.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① (생 략)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참석하는 ---------- ---------- ---------- ---------- ----------. ③---------- ---------- ---------- 참석하는 ------ ---------- ---------- ----------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 ~ ⑥ (생 략)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함께 적고 --------- ---------- ---------- -------.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 ---------- 부치는 경우 ---------- ---------- ---------- ----------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 략)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 10. (생 략)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① ---------- ---------- -- 종류---------- ---------- --------. ---------- ---------- ----------.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종류별 금액 4.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19조(채권 원부) ① ---------- ---------- -----. 1. ---- 종류별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생 략)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재무상태표------ ---------- ---------- ----------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 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대차대조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 의무 등) ① ---------- ---------- 재무상태표 ---------- ---------- ---------- --. ② (현행과 같음)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비보조 등) ① (생 략)	제7조(학비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 ---------- ------의류비----------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비보조 등) ① (생 략)	제6조(학비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의복비----------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하부조직) ① ~ ③ (생략)	제19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2. ---- 접수·발송----------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⑤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2. ---------- 운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행정심판국) ①·② (생략)	제11조(행정심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2. ---------- 접수·발송------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생 략)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除毒) 방안 마련	1. ---------- 독성제거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 독성제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생략)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	2. ---------- 독성제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생 략)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훈장·포장을 수여하거나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보상) ---------- ---------- ---------- 시험제품---------- ---------- ----------.

국민투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재자신고서 접수) ①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이 부재자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한 후,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고 신고요건이 갖추어진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명기하고 본인에게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때에는 투표인명부의 그 해당자 비고란에 "부재자"라고 명기하고, 구	제7조(부재자신고서 접수) ①--- ---------- ---------- ---------- ---------- ---------- ---------- ---------- ---------- ---------- ---------- ---------- ---------- 명확하게 기록하고 ---------- ---. ②---------- ---------- ---------- ---------- 명확하게 기록

·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하고----------.
제10조(투표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구·시·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날인할 인장의 인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투표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 ---------- ---------- ---------- ---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
제13조(투표인명부의 수정) ① (생 략)	제13조(투표인명부의 수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7조제2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명기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 ---------- ---------- 명확하게 기록하고---------- ----------.
③투표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투표인명부 확정전까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중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명기하며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 ---------- ---------- ---------- ---------- ---------- 명확하게 기록하며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사관) ① (생 략)	제9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전 및 물품 손·망실(損·亡失)의 처리	5. ---------- 손실·분실----------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3. ----------접수·발송----------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규격 및 재질) ① (생 략)	제4조(규격 및 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②----------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① ~ ③ (생 략)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입회	3. ---------- 참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 ---------- 계속 진행하여야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4. ----------접수·발송----------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 기관차·전차·객차(客車) ----------.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1. ---------- 옮겨심기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2. ----------
가.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가. ----------폐쇄도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① (생략)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6. ----------재무상태표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②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3. ---------- ---------- -재무상태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3. ---------- ---------- -재무상태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①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계기별납하거나 후납할 수 있다.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① ---------- ---------- ---------- -- 후납---------- ---.
②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 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별납 ---- ---------- ---------- ---------- ------.
제13조(국제반신우표권)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① ---- -------- 국제회신우표권--- ---------- ---------- ----------.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② ---------- 국제회 신우표권---------- ----------.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여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① -- ---------- ---------- ----------

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 등을 별납 또는 계기별납하거나 후납하는 우편물	5. ---------- ---------- 후납하는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①·② (생 략)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에게는 미리 연기식(連記式) 우편물 접수증 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 잇따라 적는 방식으로 된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① (생 략)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 ---------- ---------- 참관 ---------.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우편물의	③ ---------- ----------

수취인을 통관절차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 참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 ④ (생 략)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기명자가 작성한 영수증서를 소지한 자와 미리 신고된 인장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는 이를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본다.	제21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도장-----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 --- 육상 운송----------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4. ----------접수·발송----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항공정책실) ①·② (생략)	제16조(항공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4. (생 략)	1. ~ 44. (현행과 같음)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酒精飮料) 등의 섭취·사용·측정 등에 관한 사항	45. ---------- ---------- -- 주정음료(에틸알코올 희석 또는 불순물 정제를 거친 주류) ----------
46. 삭 제	
47. ~ 66. (생 략)	47. ~ 6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원장) ①·② (생 략)	제21조(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총괄----- ----------.
제25조(청장) ①·② (생 략)	제25조(청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총괄----- ----------.
제30조(지방항공청장) ①·② (생략)	제30조(지방항공청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총괄----- ----------.
제40조(철도경찰대장) ①·② (생략)	제40조(철도경찰대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총괄----- ----------.
제4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제4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총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 ④ (생 략)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 총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공시설) ----------.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1. ----------구거(溝渠: 도랑)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생 략)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여러 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④----------

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3. ----------정지(땅고르기)----------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② ----------객토(새 흙 넣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2. ---------- ---- 오니(오염된 침전물)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3. ---------- 고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1. ---------- 고려----------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	2. ---------- 고려---

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고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명확하게 기록하여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명확하게 기록된 ---------- ---------- ---------- ----------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표지장)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명찰,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제8조(표지장) ①---------- ---------- 이름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歸屬財産訴請審議會規程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권한)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6조(위원장의 권한) ①---------- ----------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귀속재산은 좌에 의하여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 또는 낙찰자에게 매각한다.	제9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찰은 관재위원회위원, 언론계인등 입회하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찰한 결과 최고액 입찰자가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으로써 제10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저하할 때에는 정부 사정가격으로써 매각한다.	2. ---------- 참관하에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3주일이내에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 신고----------.
제12조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 대금지급방법----------.
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사무를 총괄한다.
제24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 재무상태표----------.
제32조 각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을 선	제32조 ----------

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다.	----------.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총괄하고 ----------.
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 재무상태표 ----------.
제43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3조 ---------- 사무소를 현장 조사하여 -------.
제58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고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	제58조 ---------- 재무상태표 ----------

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생 략)	제59조 ----------. 1. ---------- 현장조사 ---------- 2. (현행과 같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② (생 략) ③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생 략)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고려하여 ---------- -------. ④ (현행과 같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제6조의2(권한의 위탁) ---------- ---------- ---------- ----------. 1. ---------- 실제 조사---------- ---------- ---------- ----- 2. ~ 3. (현행과 같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생 략)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7. (생 략) ③ (생 략)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손도장---------- ---------- ---------- ---------- ---------- ----- 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행정인사과) ① (생 략)	제11조(행정인사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5. ----------접수·발송----------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분담금) ① ---------- ---------- ---------- ---------- ---------- ---------- ---------- ---------- ------- 고려---------- ----------. ---------- ---------- ---------- ---------- ---------- ---------- ---------- ---------- 고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	④ ----------

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고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가신청서) ① (생 략)	제4조(인가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2. ---------- ---------- ---------- 예상수입·지출계산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 (생 략)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② ---------- ---------- ----. ---------- ---------- ----------

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2. ---------- ---------- ---------- ---------- ---------- 예상수입·지출계산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①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①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3. ------ 종류별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채권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1조(채권원부) ① ---------- ---------- ----------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1. ------ 종류별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1. ---------- 재무상태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3.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가. ---------- 재무상태표 ----------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나. ---------- 재무상태표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 상태, 표면 보수·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2. ---------- 갈라진 상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소화(消化)·개량사업	3. ---------- 습득(習得)-------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조사·분석 전문기관) ① (생 략)	제10조(조사·분석 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중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 ---------- ---------- ---------- ---------- ---------- ---------- 총괄----------.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 ---------- ---------- ----------.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1. ---------- 토석(土石)·사력(자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 ---------- ---------- ----------. ------- ---------- ---------- ---------- ----------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35조(국·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생 략)	제35조(국·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당해	⑤---------- ---------- ---------- ---------- ---------- ----------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하천·도랑·제방·유지(溜池) 또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2. ---------- ---------- ----------유지(溜池: 웅덩이)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비점(沸點)을 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3. ---------- ---------- ---------- 끓는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5. ---------- 시험제품----------.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

다. 1. ~ 5. (생 략) 6. 시제품 제작비 7. ~ 12. (생 략) ②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시험제품 ------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 4. ~ 10. (생 략)	제12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접수·발송---------- 4. ~ 10. (현행과 같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운항규칙)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운항규칙)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2. ---------- 선박운항정지(정선)----------.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7. ---------- 앞지르기하려는 -------- 앞지르기당하는 ---- 앞지르기하거나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법 제21조에 따라 체결·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 명확하게 기재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료지원금) ① (생 략)	제13조(의료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하되, 지급액 산정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며,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 ---------- 단리할인법---------- ----------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①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 ---------- 추정재무상태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①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농약, 비료, 양액(養液),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① ---------- ---------- ---------- ---------- ---------- ---------- ---------- ---------- 배양액- ---------- ---------- ----------. 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 12. (생 략)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조림(造林)자금-- ---------- ------ 5. ~ 12.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지원	5. 업무절차 ----------
5의2. ~ 17. (생 략)	5의2. ~ 17.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접수·발송 ----------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12조(농업정책국) ①·② (생략)	제12조(농업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32. 한해(旱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2. 가뭄해 ----------
33. ~ 35. (생 략)	33. ~ 35. (현행과 같음)
제21조(식물검역부) ① (생 략)	제21조(식물검역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7. ----------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한다 1. (생 략) 2.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노임 3. ~ 7. (생 략)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 ---------- ---------- ---------- 1. (현행과 같음) 2. ---------- 임금 3. ~ 7.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금 전도교부와 정산) ①·② (생 략)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전도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내에 사업실적에 의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선지급교부를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概算額)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① ---------- ---------- ---------- ---------- 추산액---------- ---------- ---------- ---------- ----------. ②·③ (현행과 같음)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옹벽, 암거, 용·배수관, 측구 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길도랑(측구)----------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로부속물) ----------.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1. ------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공동구	6.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방음숲---------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② (생 략)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차량의 제원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1. 취입보(取入洑)	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 실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2. ---------- 실제 조사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 실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③ ---------- 실제 조사 ----------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 -- 고려하여 ---------- --.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①·② (생 략)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	9. ----------

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고려하여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접수·발송 ----------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관리,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등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직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2. --- 관인의 보관 및 관리--- ----------

3. ~ 23. (생 략)	3. ~ 23.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업환경부) ① (생 략)	제17조(농업환경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농경지 토양의 시비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8. ---------- 비료사용처방 ----------
9. 삭 제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업생물부) ① (생 략)	제18조(농업생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1. ---------- 분류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생략)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미생물 대사산물 및 실용화 연구	6. ----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사료작물·풋거름작물·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직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2. --- 관인의 보관 및 관리---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28조(남부작물부) ① (생 략)	제28조(남부작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부지역 다모작에 적합한 논이용 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2. ------ 이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두 번 심어 거둠) 또는 다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세 번 이상 심어 거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직무) ---------- ---------- ---------- ---------- 사양(기르기)---------- ---------- ----------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 ④ (생 략)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 제 3. ~ 5. (생 략) ⑥ 삭 제 ⑦ (생 략)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치어(어린 물고기) ---------- ---------- ---------- ---------- 3.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 ---------- ----------.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하여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1. ---------- 고려하여 ----.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③---------- 고려하여 ----------. ----------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2. ---------- -- 추정재무상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 ---------- ---------- ---------- ---------- ---------- ---------- ----------. ----- ---------- ----------.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1. ---------- 재무상태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 촉진	2.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 (생 략)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모량(損耗量)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 손실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② (생 략)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③ ----------.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균 손모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생산한 물품등	1. ---------- 손실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기간·계약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부품·사양의 변경 다.·라. (생 략) 3. ~ 5. (생 략)	2.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규격------- 다.·라.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문서의 분류·수발(受發)·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 ~ 13. (생 략)	제15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접수·발송---------- 4. ~ 13. (현행과 같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② (생 략)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름표----------.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찰반) ① (생 략)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 ⑦ (생 략)	제7조(감찰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관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부속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7. ---------- 방음숲----------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행위를 말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생 략)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2. ---------- ---------- ---------- ---------- ---------- -
가. 굴진(掘進)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가. 굴진(굴 파기)방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나. 개착(開鑿)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라. ---------- - 퇴비저장시설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 ---------- ---------- ---------- ---------- ----------

와 같다.	-----.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전봇대---------- ---------- ---------- ---------- ---------- ---------- ---------- ---------- -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 ---------- ---------- ---------- ---------- ----속(안)도랑---------- ----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생 략)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② ----------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 ---------- ---------- ---------- ----
가.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가. 안전울타리----------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3. ---------- ---------- ---------- ---------- ---------- -----
가. 가로수, 전주 등 지장물(支障物)	가. ----- 전봇대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정도서의 지정기준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는 10인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도서의 지정기준등) ① ----------.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제15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

방식을 정할 수 있다.	----------.
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 ----------분할·합병----------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 ----------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2. ---------- 고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1. 전봇대---------- -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7. ---------- 성토(흙쌓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스공급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3. ----------. -- ---------- 정압(定壓) 조정실을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총괄---.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사무를 총괄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 ⑦ (생 략)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2. (생 략)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5. (생 략) ⑨ ~ ⑪ (생 략)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1.·2. (현행과 같음) 3. ---------- 지급----------. ---------- 지급 ----------. 4.·5. (현행과 같음)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1. 합병·인수, 법정관리신청 - ----------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① ----------
1. 무균제제(無菌製劑, 주사제·점안제 및 안연고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소, 생물학적 제제의 작업소 및 그 밖의 제제 작업소 는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것	1. 무균제제[無菌製劑, 주사제·점안제(點眼劑: 안약) 및 안연고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6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
1.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생물학적 제제의 종류 및 제조방법에 따라 해당 제제를 제조하는 데에	1. ----------. ----------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미생물을 배지(培地)에 이식하는 시설	라. 미생물을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에 이식하는 시설
마. ~ 자. (생 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제조의 수탁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동물용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자동에어로졸 충전, 연필 제조, 가스 주입, 도금, 주물,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 판금, 사출, 인쇄, 코팅(coating), 도장, 멸균, 직조, 타면, 덴타(tenter) 또는 설계에 관한 공정을 수행하는 자(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 텐터(tenter, 원료를 주형에 맞게 펴는 공정)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 ~ ③ (생 략)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다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대조하려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거나 중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관리하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및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감정서 등의 서면, 유선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④ ---------- 팩스 ----------

한다. ⑤·⑥ (생 략)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팩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護岸) 등 외곽시설 나.·다. (생 략) 라. 안벽(岸壁), 물양장(物揚場), 계선(繫船) 말뚝, 계선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 ---------- ---------- ---------- ---------- ---------- ---------- ---------- ---------- ---------- ---------- ---------- ---------- ----------. 1. ------ 가. ---------- ---------- ----------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부표,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2. 기능시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사로, 램프,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上下架施設)	나. -----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마리나선박)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호버크래프트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 대통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 ---------- ---------- ---------- ----------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 성토(盛土), 정지(땅고르기)----------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2. ----------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입회금"이라 한다)의 반환	4. ---------- 지급하는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32조의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경우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범위: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대상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중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船席)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 규모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나. ---------- ---------- ----------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3. ---------- 시험제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試製品)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2. ---------- 시험제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1. 추정대차대조표	1. 추정재무상태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무) ① 명예영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직무)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거래 및 외자(外資)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4. ------ 외국자본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8조(해임) ---------- ---------- ---------- ----------.
1.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1. --------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문서 접수·발송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6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수발	4. ----------접수·발송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8. ----------수신·발신----------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26조(교학처) ① (생 략)	제26조(교학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제증명 발급	8. ---------- 각종 증명 ----------
제32조(행정운영단) ① (생 략)	제32조(행정운영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2. ---- 수신·발신----------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제45조(기획연수부) ① (생 략)	제45조(기획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안·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3. ---------- 수신·발신----------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생 략)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안·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 수신·발신----------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흙고르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상수도·철도·공동구(共同溝)·공공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굿둑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호안(기슭·제방 보호시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및 시기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스공급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3. ----------.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 고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생 략)	제41조(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② ----------. ---------- 고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①·② (생 략)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제2항	③ ----------

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 5. (생 략) ④ ~ ⑦ (생 략)	---------- ---------- ---------- ---------- ---. 1. (현행과 같음) 2. ---------- 지급방법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 다. (생 략)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증적(證迹)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생 략) 2.·3. (생 략)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자취 ---------- --------- 마.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증적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라. ---------- ---------- ---------- - 자취 ----------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 ---------- ---------- ---------- ---------- ---------- ---------- ---------- ----------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일 것	1. ---------- ---------- 익히고 개량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3. ---------- 절토(切土: 땅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나. ---------- 소산(疏散: 분산시킴)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 (생략)	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식(制式)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 제작 양식 ----------.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 일 단위로 계산한 ----------

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 ----------.
제45조(실비변상 등) ①·② (생 략)	제45조(실비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③ ---------- ---------- ---------- ----------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 -----.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 ~ ③ (생 략)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④ ---------- ---------- ---------- ---------- 참관시켜야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정법인이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용사동(收容舍棟)	2. 수용동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 ---------- ---------- ---------- ---------- ---.
1. 거실 및 수용사동	1. ----- 수용동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 ⑧ (생 략)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현장조사 ----------. ---------- ---------- 현장조사 ---------- ----------. ⑤ ---------- 현장조사 ---------- ----------. ⑥ ~ ⑧ (현행과 같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조정관) ①·② (생 략)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22. (생 략) 23.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4. (생 략) ④ (생 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2. (현행과 같음) 23. ---------- 접수·발송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생략)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임금단가통계에 ------- 건설임금단가통계도 --. ---.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ㆍ4. (생 략)	제12조(의료지원금) ------------------------------------ 간병비---. 1. (현행과 같음) 2. 간병비-- 3.ㆍ4. (현행과 같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결산보고) ①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 재무상태표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9조(대가의 공탁) ---------- 지급하려는 ----------. 1. ~ 3. (현행과 같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 략)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생 략)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회의에 부치는 ---------- ③ (현행과 같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演奏所)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 ③ (생 략)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방송되지 아니하거나 순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순차적으로 연기할 ----------. ---------- 순차적으로 연기된 ----------.
제60조의6(약관 변경의 통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편 또는 모사전송 2. ~ 5. (생 략)	제60조의6(약관 변경의 통지) ----------. ------- 1. ------- 팩스 2. ~ 5.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 ----------팩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handhole)·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11. ~ 22. (생 략)	11. ~ 2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총괄----------.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11. ----------접수·발송----------
12. ~ 26. (생 략)	12. ~ 26.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② (생략)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7. ---------- --- 조사이관
18. ~ 28. (생 략)	18. ~ 2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감사관) ① (생 략)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금전 및 물품 손망실의 처리	7. ---------- 손실·분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7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1. ----------접수·발송----------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생략)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현행과 같음)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26. 대량생산품---------- ----------

27. ~ 29. (생 략)	27. ~ 29.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생 략)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양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3. 대량생산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속선의 척수(隻數)	3. ------ 선박 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 선박 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③ (생 략) ④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팩스----------.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팩스----------.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설임금단가 ---------- 건설임금단가 ---------- 정부임금단가 ---------- 정부임금단가 ----------.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지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 ---------- 수입·지출 예산서----------.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생 략)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팩스 ----------.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생 략)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모사전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팩스--

송,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 ---------- ---------- ---------- ----------.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생 략)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 팩스 ----- ---------- ----------. ---------- ---------- ---------- ---------- ----------.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 ---------- ---------- ------- 팩스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형 집행---------- ---------- ---------- ---------- ---------- ---------- ---------- ---------- ---------- ---------- ---------- ---------- ---------- ----.
제7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7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록물의 정리·분류·수발·보존·이관·폐기·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3. ----------접수·발송----------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정본부) ①·② (생 략)	제12조(교정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20. ---------- 의복 및 음식----------
21. 수용자의 영치금품·피복·급양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의복·음식 ----------
22. ~ 36. (생 략)	22. ~ 36. (현행과 같음)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② (생 략)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26. ---------- 각종 증명-------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제18조(연구위원) ①----------

기타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 형 집행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직무) ---------- 형 집행사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속공무원·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6. ---------- 의복 및 음식---------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제26조(직무) ----------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형 집행----------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② (생 략) ③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고려하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7. ----------고려하여----------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고려하여----------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지를 말한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13. ---------- ---------- ---------- ----- 고려하여 ---------- ----------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3. ---------- ----------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 고려하여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③----------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 ---------- ---------- ---------- 고려하여 ---------- ---------- ----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⑧ (생 략)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⑩ 삭 제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	⑪ ----------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재무상태표----------.
⑫·⑬ (생 략)	⑫·⑬ (현행과 같음)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 고려하여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소득처분) ① (생 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②---------- 재무상태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

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1. ---------- ---------- 재무상태표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 재무상태표----------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 ⑦ (생 략)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 ----- 고려하여 ----------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6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수발	4. ----------접수·발송
4의2. 삭 제	
4의3. ~ 10. (생 략)	4의3. ~ 10. (현행과 같음)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1. ---------- 사법(私法)상 권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 개정 또는 폐지-------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상회하는 주식	2. ---- 웃도는 ------
제23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 ----------재무상태표----------.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생 략)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추정재무상태표----------.
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생 략)	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 장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① (생 략)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금관리단은 국가부담금에 대하여 직원의 퇴직률·보수인상률·정원증가율과 그 밖에 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개산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② ---------- 추산금----------

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과부족액을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57조제2항에 따른 개산금 통보의 접수	21. ---------- 추산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름표---------- ----------. ---------- ---------- ---------- ---.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명찰·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하여야 한다.	④ ----------이름표----------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의료정책·약무정책---------- ----------.
제11조(인구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 략)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 42. (생 략)	제11조(인구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5. (현행과 같음) 26. ----------지급체계---------- 27. ~ 42. (현행과 같음)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급제도 ----------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 ----------. ------ 명확히 기재하여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桟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桟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와 그 종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가신청)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9조(허가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실제 조사---------- ----------.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② (생 략)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삭 제 ⑤ (생 략)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팩스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 ---------- ---------- ---------- ----. 1. ---------- ---------- ---------- ---------- --- 지급--------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특별준수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2. ----------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생 략)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항고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다만, 재항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계속 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석(表石)을 세워야 한다.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 표지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생 략)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생 략)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급한 ---------- 지급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	3. ----------

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고려하여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 -------- 고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생 략)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 ---------- ---------- ---------- ---------- ------ 건설임금단가통계에 - ----- 건설임금단가통계도 -- ---------- ---------- ---------- --------. ---------- ---------- ---------- ----------.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료지원금) ---------- ---------- -- 간병비----------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2. 간병비---------- ---------- ---------- ---------- ---------- ---------- ---------- ----------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① (생 략)	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자 및 성상(性狀)·기능·용도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한 경우	2. -------- 성질·상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제17조(비축대상물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2. 의복류·가죽류----------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減耗)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 자연손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 ---------- ---------- ---------- ---------- ---. ---------- ---------- ---------- ---------- 웃도는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생 략)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라. (생 략) 마. 응력측정 비파괴검사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맨눈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응력(변형력)측정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 ③ (생 략)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명확하게 적어야 ---------- -----. ⑤·⑥ (현행과 같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 5. (생 략)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② ~ ⑥ (생 략)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지급한 ---- ② ~ ⑥ (현행과 같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
1.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90일	1.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2.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 삭 제	
나. 복표,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복권----------.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수수료) ①----------.
1. 영업의 허가	1.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허가: 10만원	가. 복권발행업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변경허가	2.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변경허가: 5만원	가. 복권발행업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승계신고	3.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승계신고: 5만원	가. 복권발행업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생 략) 4. 공사 시방서(示方書)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 12. (생 략) ③ (생 략)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현행과 같음) 4. --- 설명서---------- 5.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생 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생 략)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 마. (생 략)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 소금생산업----------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 마.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 ---------- 가. ---------- - 소금생산업인---------- --- 나. ---------- 소금생산업 ---------- ---------- 다.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② (생 략)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고려하여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2. 입목·대나무가 ---------- ----------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3. 입목·대나무가 ---------- ----------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4. 입목·대나무가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② (생 략)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2. ---------- 하도급----------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 ----------.
1. 병충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벌채	1. ------ 예방·제거--------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자금지원)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11. ---------- 예방·제거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록물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접수·발송----------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垜穗圃)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의2(직무) ---------- 채수포(採穗圃: 꺾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② (생 략)	제25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 직접비	2. ---------- 시험제품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② (생 략)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 재무상태표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⑪ (생 략)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⑪ (현행과 같음)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 ---------- ---------- 지급-- ---------- ----------. -- ---------- ---------- ---------- ---------- ---------- ---------- ----------.
⑬ 삭 제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⑭---------- ---------- ---------- ---------- ---------- ---------- ---------- ----------

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급---------- 지급----------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② (생 략)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 ------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 ⑤ (생 략)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	⑥ ----------

청을 받아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2. ---------- 대금지급방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승인)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노유자시설	아.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자. ~ 하. (생 략)	자. ~ 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생략)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0. (생 략)	1. ~ 50. (현행과 같음)
51.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1. ----------가죽 ----------
52.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2. ----------가죽 ----------
53. ~ 70. (생 략)	53. ~ 70. (현행과 같음)
71.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71. ----------[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72. ~ 89. (생 략)	72. ~ 8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② (생략)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6. (생 략)	1. ~ 66. (현행과 같음)
67.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7. 광해(광산피해)방지기본계획 ----- 광산피해 ----------
68. ~ 95. (생 략)	68. ~ 9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사무국) ① ~ ③ (생 략)	제45조(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10. ---------- 문서 접수·발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⑫ (생 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6.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다. 입목·대나무---------- ---
6의2. ~ 12. (생 략)	6의2. ~ 12.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 ④ (생 략)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	⑤ ----------

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 ---------- ---------- 임금단가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 ---------- ---------- 지급한 ---------- ---------- ---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 ---------- ---------- ---------- ---------- 고려하여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 략)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략)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③ ----------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고려하여 ----------.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 략)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 ---------- 고려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③ ----------

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 ---------- 지급한 ----------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 고려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	2. -------------------- 고려하여 --------------------

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가.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	⑧ -------------------- 고려하여 --------------------

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 ----------.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② (생 략)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 고려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	⑤---------- ---------- 고려하여 -----

하는 배율을 말한다.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 ---------- -- 고려하여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

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생 략)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고려하여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 고려하여 ---------- --------. ----------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고려하여 ----------

율)]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 ---------- ---------- ----------.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1. ---------- ---------- ---------- ---------- --------- 고려한 ------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2. ---------- ---------- ---------- ---------- ---------- 고려한 ------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 ---------- ---------- -- 고려한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 ----. ---------- ---------- ---------- ---------- ----------.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 ---------- ----------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 ---------- ----------. -------- ---------- ---------- ---------- ---------- ----------.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고려하여 ---------- ---------- ---------- ---------- ---------- ---------- ----------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 11. (생 략)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수입·지출계산서------ 4. ~ 11. (현행과 같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생 략)	제3조(출연금의 요구) ----------. 1. (현행과 같음) 2. ---------- 재무상태표 3. (현행과 같음)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생 략)	제14조(결산보고) ----------. 1. ---------- 재무상태표 2. (현행과 같음)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7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수발	4. ----------접수·발송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
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고시한 지역	1. ---------- -- 취토장(흙 채취장)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제4조(토지의 용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채석장·토취장을 활용한 생태·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7. ------취토장----------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	7. ------- 취토장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切土: 땅깎기)·성토(盛土: 흙쌓기)·정지(整地: 땅고르기)----------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3. ------ 종류별 금액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 ---------- ---------- ---------- ---------- -------- 명확하게 기록한 - ---------- ----------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생 략)	제5조의2(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상검사 및 진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나. ---------- 조혈계(혈구형성계통)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보증계정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제42조(보증계정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와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 --------- 재무상태표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생 략)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재무상태표----------.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 일정한 입도(粒度)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가. ------ 입자 크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건류(乾溜)한 것(이하 "무연 코크스"라 한다)	다. ---------- 건류(석탄 등 고체 유기물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일)----------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폐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3. (생 략)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 ---------- ----------. 1. (현행과 같음) 2. -------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 3. (현행과 같음)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2. (생 략) 3. 2007년11월 4 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가. ---------- ---------- --------호소(湖沼: 호수와 늪) ---------- ---------- ---------- ---------- ---------- ---------- ---------- ---------- -. ---------- ----------.

1)·2) (생 략) 나. (생 략) ②·③ (생 략)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생 략)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龍骨)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1)·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 ---------- ---------- ----------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입의 분배)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 2. ~ 5. (생 략) ② (생 략)	제23조(수입의 분배) ① ------- ---------- ---------- ----------. 1. ---------- -- 지급하는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 10. (생 략)	제24조(회칙) ---------- ---------- ----------. 1.·2. (현행과 같음) 3. 가입 ---------- 4. ~ 10. (현행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생 략)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고려할 ---------- ---------- ---------- ⑤ (현행과 같음)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 고려하여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 략)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⑤---------- 고려하여 ----------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고려하여 ----------.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가.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 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 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가.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 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	3. ----------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가. ----------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	4. ----------

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 ---------- --.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가. ---------- ---------- ----------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 ---------- ---------- ---------- ---------- 고려하여 --- ---------- ---------- ----------.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9. ---------- ---------- 고려하여 ---------- ---------- ----------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 ---------- 고려하여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밖의 토지의 범위) ①----------.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14. ----------고려하여----------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4. ----------고려하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고려하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② 삭 제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2. ---------- ---------- ---------- ---------- ---------- ---------- 팩스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②(생 략) ③ 삭 제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②(현행과 같음) ④----------등록----------.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 제작 양식----------.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괄하며----------.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⑤ (생 략)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포함---------. ④·⑤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 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하며----------.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생 략)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생 략)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 ⑤ ~ ⑩ (생 략)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거 경력----------. ③ (현행과 같음) ④----------. 1.·2. (현행과 같음) 3. ---------- 정 해진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개편·폐지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생 략)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개편 또는 폐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	④---------- ---------- ----------

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생 략)	제34조(시험실시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	2.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나. ---------- 정해진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총괄하며----------. ② ~ ④ (현행과 같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 (생 략)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정해진 ---------- ----------. ③·④ (현행과 같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예산과 결산) ①·② (생략)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무상태표 ---------- ---------- 재무상태표----------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기능·성상(性狀)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1. ----------성질·상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보고) ----------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1. ---------- 재무상태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① (생 략)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조정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②---------- 회의에 부치는 사항----------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차대조표 3. ~ 5. (생 략) ④ (생 략)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재무상태표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 ---------- ---------- ---------- ---------- ---------- ---------- ---------- ---------- ---------- ---------- 부칠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결정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의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가결정통보) ---------- ---------- ---------- ---------- ----------. ---------- ---------- ----------팩스---------- ----------.
제2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21조(실비변상) ---------- ---------- ---------- ---------- ---------- ---------- ---------- ---------- ----------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자(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2. ---------- ---------- 고려하여 ---------- ----------. --------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사무----------.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에 부치는 안건----------.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 1.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생 략) 3. 등기부등·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의 작성 ② (생 략)	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①----------. ---------- 1. ---------- -- 각종 증명---------- 2. (현행과 같음) 3. ---------- -- 각종 증명신청서---- ② (현행과 같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 ③ (생 략)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概算額)을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고,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면 해당 수매 및 처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 추산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관리) ① ---------- 추산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 모양의 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 어구)----------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거나	제38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밑바닥 퇴적물(저질) ---------- ----------.
제41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제41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揚陸)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6. ----------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김)----------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 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 기간, 어획고 또는 제품 생산량, 보유 선박 수·톤수 또는 시설 규모 및 종사자 수를 적어야 한다)	7. ---------- 어획량 ----------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선발육종(選拔育種)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생 략)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방류 제한) ----------. 1. (현행과 같음) 2. ---------- 품종개량 ---------- 3. (현행과 같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지 실제 조사----------.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採苗連)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4.·5. (생 략)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 1.·2. (현행과 같음) 3. ----------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 4.·5. (현행과 같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호버크래프트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예항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항(曳航)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 ---------- ---------- ---------- ---------- -- 예인항해---------- ---------- ---------- ---------- ---------- ---------- ----------. ----------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생 략)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②---------- 고려하여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①----------.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재료수불대장 및 수출물품수불대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 ----------.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①·②(생 략)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속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계속 진행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생 략)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5.·6.(생 략)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 ---------- ---------- ---------- ---------- ----. 1. ~ 3.(현행과 같음) 4. ---------- ---------- ---------- ----------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 5.·6.(현행과 같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5. ----- 절토사면(깎기비탈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댐의 파이핑(piping) 및 구조적 균열	6. --- 파이핑(piping: 흙·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9. ---------- 염해(鹽害: 염분 피해) ----------
10.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재원) ①·② (생 략)	제32조(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2. ---------- 추정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생 략)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3. ----------접수·발송----------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①·② (생 략)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식품·의약품등의 유전독성, 면역독성, 국소독성, 광독성(光毒性), 이식독성 및 흡입독성의 시험·연구	7. ---------- 광독성(光毒性: 빛에 의한 독성 반응성)----------
8. ~ 34. (생 략)	8. ~ 34. (현행과 같음)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 (생 략)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을 받	② ----------

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총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12(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8조의12(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5. -------- 숯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 (생 략)	제20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 ---------- ---------- 고려-------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보증료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의2(보증료등) ① ------- ---------- ---------- ---------- -- 고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 ---------- -------- 고려----------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1. ~ 3. (현행과 같음) 4. ---------- 회의에 부치는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9(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2.·3. (생 략) ② (생 략)	제32조의9(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 1. 추정재무상태표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어업·양식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① (생 략)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의 등본에 따라 이기 등록(移記登錄)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 옮겨 썼다는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①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①--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자의 발생시기나 지불시기	3. ---------- 지급시기
②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임의 지불시기	2. ---- 지급시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정지(땅고르기)·포장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 ---------- 대기실 ----------.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위(潮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② (생 략)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 4. (생 략)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 재무상태표 ---------- 2. ~ 4. (현행과 같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3. (생 략) ② (생 략)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 ---------- ---------- ---------- ---------- ----------. 1. ----------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생 략)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갖추어 두되,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무상태표----------. ③ ----------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 개인정보면----------.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생 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4. 재판이 진행 중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재판이 진행 중인 ----------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6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서의 분류·수발 및 통제	7. ----------접수·발송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 략) 8.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 7. (현행과 같음) 8. ---------- 회의에 부치는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2.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 6. (생 략)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절토(땅깎기)·성토(盛土)·정지(땅고르기)·포장(鋪裝) ---------- 4. ~ 6. (현행과 같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 재무상태표----------.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생 략)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② ---------- 일수에 비례하여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3. (생 략)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재무상태표 ---------- 2.·3. (현행과 같음)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2. 사구 식생(砂丘 植生)의 훼손 또는 변형 ②·③ (생 략)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사구 식생(砂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 ②·③ (현행과 같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창립총회) ①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 ①---------- ---------- ---------- ---------- -- 총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 ---------- ---------- ---------- ---------- ---------- ---------- ---. ---- 해당 군함 또는 선박 ---------- ---------- 공해대(公海帶)----------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예비군표지장: 모표·명찰·흉장·휘장·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4. ----------이름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	3) ----------

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바로 위 수직면----------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라. ---------- 설계축하중----------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 ---------- 고려하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 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2. ---------- ---------- 깊이 증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 략)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통제	10. ----------접수·발송----------
11. ~ 30. (생 략)	11. ~ 30.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교수부) ① (생 략)	제39조(교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청각교육기재의 관리 및 교재편찬	8. 시청각교육 기자재----------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7조(운영지원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의전	2. ---------- 보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접수·발송----------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생 략)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 고려하여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차주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 차관 제공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② (생 략)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 안건이 부쳐진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다. ---------- ----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삭 제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 ---------- ---------- --. ---------- ---------- ----------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재무상태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무상태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퇴직 시 임기제 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	1. ----------
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이나 폐직 또는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가.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줄어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	3. ---------- -------. ----------

항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 병행할 ---------.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 ---------- 병행할 ---------. ---------- ----------.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과원(過員)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 없어지거나 ---------- 정원이 초과된 경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우편사업단) ①·② (생 략)	제9조(우편사업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19. ---------- 개방 또는 폐쇄
20. ~ 25. (생 략)	20. ~ 25. (현행과 같음)
제10조(예금사업단) ①·② (생 략)	제10조(예금사업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5. ---- 계좌대월(대신 지급) ----------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제14조(직무) 우정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직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생의 등록, 제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6. ---------- 각종 증명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직무)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우편환·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수불금의 회계처리·결산 2. ~ 5. (생 략)	제17조(직무) ----------. 1. ---------- ----- 출납금---------- -- 2. ~ 5. (현행과 같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추정 대차대조표 3. (생 략) ③·④ (생 략)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재무상태표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등) ①----------.
1. 전시작전지역에 있는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피복대여 및 급식제공. 이 경우 급식비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의복대여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과기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재무상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원본(元本)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원금----------.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제30조(결산 보고) ----------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1. ---------- 재무상태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 -----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 ---- 유동성그물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 ---------- 채낚기(낚시로 채어 낚는 어업)----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 -------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

	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 어구)----------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권면액·기호·번호·장수 및 이표.	12. ----------이표(이자 증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 ---------- ---------- ---------- ----------.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원자로의 노형·열출력 및 기수	나. ------- 노형(爐型)----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①방호협의회에 부의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①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①·② (생 략)	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 ---------- ---------- ---- 회의에 부치는 ----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생 략)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	②---------- ----------

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 한다.	---------- ---------- ---------- ---------- ---------- ---------- 통보 하여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시설검사 실시)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시설검사 실시)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밀 또는 수밀이 요구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수 있을 때	3.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은 제외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19조(시험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	제119조(시험방법) ① ---------- ---------- ---------- ----------

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 노형(爐型)----------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6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문서 수발·관리, 관인 관리	2. --- 접수·발송----------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소장) ①·② (생 략)	제12조의4(소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총괄----------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술에 취한 사람 ----------. ----------.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② (생 략)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 (생 략)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탱크시험합격확인증"----------------------------------. ③------------------------------ 탱크시험합격확인증--.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완공검사필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해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④완공검사합격확인증----------------------------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⑤-----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부의 간인) ---------- ---------- ---------- ---------- 편철항목---------- ---.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 (생 략)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 이기(옮겨 작성)----------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 3. ~ 5. (생 략)	제19조(동전) ----------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정(고침) 3.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 ---------- ----------

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갱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경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② (생 략)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2. ---------- -- 경정----------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 ---------- ---------- ----------

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여러 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변경등록) ---------- 붉은 선으로 지워야 ----.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갱정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 경정---------- 경정---------- 붉은 선으로 지워야 ----.
제45조(갱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제45조(경정등록) ①---------- ----------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갱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경정 ---------- ---------- ---------- ---------- ----------.
②제41조의 규정은 등록의 갱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경정 ----------.
제49조(편철필증) ① (생 략)	제49조(편철확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 편철확인증---------- ----------.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① (생략)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편철확인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전사(베껴 작성)---------- ----------.
제54조(분할) ① (생 략)	제54조(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의 기재를 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 ---------- ---------- ---------- ---------- ---------- ---------- ---------- 붉은 선으로 지워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동전) ① (생 략)	제55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 ---------- ---------- ---------- ---------- ---------- ---------- 붉은 선으로 지워야 ----.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③---------- ----------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 붉은 선으로 지워야 ----.
제56조(합병)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56조(합병) ①---------- 붉은 선으로 지워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	제57조(동전) ①---------- 붉은 선

여야 한다.	으로 지워야 ----.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주말하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붉은 선으로 지우고 ----------.
제62조(공동담보등) ①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2조(공동담보등) ①여러 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 ---- 붉은 선으로 지워야 ---.

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74조(말소의 방법) ①---------- ---------- ---------- 붉은 선으로 지워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6. ---------- ---------- ---------- ---------- ---------- ---------- ---------- ---------- ---------- ------ 지급수단---------- ---------- ----------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8. ---------- - 지급수단 ---------- 지급수단----------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 ---------- 지급수단 -- ---------- -- 지급수단----------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	9의2. ---------- ---------- -. ---------- 지급수단 ----------

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 ------ 지급수단----------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다. ---------- 지급수단 ---------- 지급수단----------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 지급수단---------- ----------.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조도(밝기)- ----------
1. (생 략) 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가. (생 략) 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照度)를 갖춘 조명시설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 ---------- ------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유·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 6. (생 략) 7. 유·도선이 다른 선박을 추	제25조(운항규칙) ---------- ---------- ----------. 1. (현행과 같음) 2. ---------- ---------- ---------- ----------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 ---------- -. 3. ~ 6. (현행과 같음) 7. ---------- 앞

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르기하려는 --- 앞지르기당하는 ------- 앞지르기하거나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汽笛) 또는 호종(號鐘)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13. ---------- 호종(선박 위치 알림 종)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	나. ---------- 앞지르기할 때에는 ----- ---------- 앞지르기할 때에는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회의에 부칠 안건---------.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③ (생 략)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정해진 ---------- ---------- ---------- ---------- ----------. ③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 ---------- ---------- ---------- ---------- ---------- ---------- ---------- 고려하여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 ---------- ----- 고려하여 ---------- ---------- ---------- ---------- ------. ② (현행과 같음)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고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2조(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 정해진 ----------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의무경찰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귀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증명서의 휴대) ---------- 정해진 ----------
제24조(복제) 의무경찰의 복제의 종류와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복제) ---------- 종류·형태·규격 및 착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①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① ----------. ---------- 정해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임무)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임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행정의 지원	2. ----------
가.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가. 문서 접수·발송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복제) 의무소방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3조(복제) ---------- 제작 양식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에 명예시장·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실지(失地)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잃어버린 땅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1. ----------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② (생 략)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참관하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인사조직과) ① (생 략)	제10조(인사조직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 문서의 분류 및 접수·발송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제19조(기획부) ① (생 략)	제19조(기획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2. ----------접수·발송----------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심낭(心囊)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심장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장제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장제비 영수증 사본 등 비용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 략)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지급---------- ③ (현행과 같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타이어식 굴삭기	6. ------ 굴착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 ---------- ---------- ---------- ---------- -----.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1. ---------- ---------- ---------- ---------- 시작일·종료일 ---------- ----------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 ---------- ---------- ---------- ----------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2.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나. ---------- 팩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 ---------- ----------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2. ---------- ---------- 팩스----------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 ----------

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2. ---------- 팩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 팩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
1. 삭 제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나. -------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 ---- 팩스---------- --. ----------

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 ----------. 1. ~ 4. (현행과 같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 9. (생 략)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소금생산업------ ---------- ---------- ----------. 3. ~ 9. (현행과 같음)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 ---------- ---------- ---------- ----------.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소금생산업---
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ㆍ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라. --소금생산업인----------------------------소금생산업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	② --

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1. ------------------- 들인 날짜로부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류시설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사. ----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2. ---------- ---------- ---------- ---------- ----------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가. ---------- ----------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 ---------- ----------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 ---------- ---------- ---------- ---------- ---------- ----------.
1. 생활·음용수 분야	1. 생활수·먹는물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섬·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나. ---------- 해수민물화- ----------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5조(방재시설)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5. ---------- ---------- ---------- ----------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8. ---------- ----------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 ---------- ----------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 ---------- ---------- ---------- ---- 회의에 부치는 안건----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회의에 부치는 ---------- ----------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⑤회의에 부치는 ---------- ----------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포상) ---------- ---------- 포상의 등급----------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 ---------- ---------- ---------- ---------- ---------- ---------- ---------- ---------- ---------- ---------- ---------- ---------- ---------- ---------- 고려하여 ---------- ---------- ---------- ----------

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 가벼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1.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 시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5. ------굴착기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① (생 략)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 정해진 사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증촉탁서) ① ---------- 정해진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청서)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하여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서) ① ---------- 정해진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번역문의 인증) ①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제32조(번역문의 인증) ① ---------- 정해진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험제품제작비 ----------. ⑤ (현행과 같음)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2. 토지의 형질변경, 흙·모래·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 또는 분할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 굴착(땅파기) ----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가스공급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 ----------

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선사업 지구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定壓調整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2. ~ 4. (생 략) ② (생 략)	제21조(행위 제한 등) ① ----------. 1. ---------- 굴착(땅파기)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저수지·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원(諸元),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저수지·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 1. 제원(諸元: 해당 시설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5(이사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의5(이사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총회에 부치는 ----------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① ---- ---------- ------ 총괄----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생 략) ② (생 략)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생 략)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 ----------
1. 우편 또는 모사전송	1. -------- 팩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생략)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 ---------- ---------- ----. ---------- ---------- 재무상태표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안분(按分)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 ---------- ---------- ----------. --- ---------- ---------- --- 비율대로 나눠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생 략)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② ---------- ----------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1. 우편 또는 모사전송	1. ------- 팩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3. ----------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3. ----------안벽(부두벽)·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汽力)·원자력·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3. ----------. ---------- ---------- ---------- ----------.
가. 터빈·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부대시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회(灰) 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2. ---------- ---------- ---------- ---------- ---------- 재처리장----------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① ----------팩스번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생 략)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4. ---------- 예산수입·지출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 다. (생 략)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마.·바.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관련 정보를 ---------- 마.·바.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생 략)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 ⑤ (생 략)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통수(通水)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2. ---------- 개방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필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 등록확인증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이용기관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① ---------- --- 지급----------.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6. ----------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7. ----------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28조(업무의 분류) ①----------.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3. ----------눈피해[雪害]----------
14. ~ 22. (생 략)	14. ~ 2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④ (생 략)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 ---------- 팩스----------.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	③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 ----------. ----------. ---------- 팩스----------.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등) ① ----------.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다. ---------- --- 상향각 ----------.
라.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라. ----------. ----------

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 상향각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부하(負荷)에 가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3. ---------- ---------- 공급하여 ---------- ----------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 ---------- ----------

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1. ----------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 ----------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5.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나. ------- 교체공사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4. --------- 교체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4. 교체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1. ---------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5조(보증한도) ①·② (생 략)	제45조(보증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정한다.	③ ---------- 고려----------.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 임금---------- ---------- 임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② (생략)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팩스---------- ---------- ----------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 ---------- ---------- ---------- ---------- ---------- 팩스번호---------- ----------

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팩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1. ---------- 지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 ⑥ (생 략)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 --------- 총괄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勳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제3조(표창의 종류) ---------- ---------- ---------- ---------- ----------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 1.·2. (현행과 같음)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 ---------- ---------- ----- 훈장·포장---------- ---------- ---------- ---------- ----------.
제11조(표창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	제11조(표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

께 수여한다. ③ (생 략)	---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 ③ (현행과 같음)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 (생 략)	제9조 (위원장) 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료지원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①--------------------간병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56만 2천원	2. 간병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시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단리할인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공물자국) ① (생략)	제11조의2(공공물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외자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자본 ----------
8. 외자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8. 외국자본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⑮ ---------- 재무상태표---------- .
⑯ ~ ⑲ (생 략)	⑯ ~ ⑲ (현행과 같음)
제36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제36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⑮ ---------- 실제조사---------- .
⑯ ~ ⑲ (생 략)	⑯ ~ ⑲ (현행과 같음)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⑦ ---------- 실제조사----------

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1. ---------- 재무상태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④ (생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	⑤----------

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퇴비저장시설----.
⑥ ~ ⑯ (생 략)	⑥ ~ ⑯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1.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1. ----------장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눈피해[雪害]·바람으로 인한 피해----------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⑦ ---------- 고려하여 ----------.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 고려할 ----------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 고려할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납부현황	4. ----------

및 거래규모·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고려할 ----------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 ---------- 재무상태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⑲ (생 략)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⑲ (현행과 같음)
<20>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 고려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㉑ ~ (생 략)	㉑ ~ (현행과 같음)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생 략)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	②----------

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마실 수 있는 --------.
1.·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 ---------- ---------- ---------- ---------- ---------- ----------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1.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다.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생 략)	④ ~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	⑬ ---------- ---------- ---------- ---------- ---------- ---------- ---------- ---------- ----- 재무상태표---------- ---------- ---------- ---------- ---------- ---------- ---------- ----------

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 ---------- ----------.
⑭ ~ ⑲ (생 략)	⑭ ~ ⑲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⑮ (생략)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⑮ (현행과 같음)
<16> 법 제121조의27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 ---------- ---------- ---------- 실제조사---------- ---------- ---------- ---------- ---------- ---------- ---------- --------.
⑰ ~ ⑳ (생 략)	⑰ ~ ⑳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1조의30제2항에 따른	⑥ ----------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교환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 ---------- ------- 실제조사---------- ---------- ---------- ---------- ---------- ---------- ----------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 ---------- ---------- ---------- --. ---------- ---------- ---------- ---------- ---------- ----------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 ---------- ---------- ---------- ---------- ---------- ---------- --.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1. ---------- 재무상태표----------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양로원·고아원·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6. --------보육원---------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생 략)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 ---------- ---------- ---------- ----------.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 ---------- ----------

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 ---------- 우편으로 부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장[중증장애인이 독거인(獨居人)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혼자 거주하거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등록업무의 온라인망 관리·운영	4. ---------- 전산망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⑥ (생략)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⑧ (생 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1. ---------- ------- 웃도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⑪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 ---------- ---------- ---------- 웃도는 ---------- ---------- ----------.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 ---------- ---------- ---------- ----------방음림(소음막이숲) ---------- ---------- ---------- ----------. -------- ---------- ---------- ----------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 ---------- ---------- ---------- ---------- ----------. ----- ---------- ---------- ---------- ---------- ---------- ---------- ----------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1.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라. ---------- ---------- ----------. -- ----------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음림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방음림을 -------. ----------.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	2. ---------- 문주(문기둥) ----------

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1. ----------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석고플라스터 ----------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석고플라스터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	제18조(난간) ① ----------

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 날려 흩어지지 않는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수해방지등) ① (생 략)	제30조(수해방지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집수정(물저장고) 등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급·배수시설) ① (생 략)	제43조(급·배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2. ----------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 -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먹는물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2. ---------- 먹는물 외의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생 략)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	② ----------

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떨어뜨려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생 략)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차대조표	2. 재무상태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생 략)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4. ---------- 종류별 ------- 종류별 ------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각종 개발의 공동구의 공사비	6. ---------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시설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의2. ----------
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가. ---------- 현장 실제 조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다. ----------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 현장 실제 조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② (생 략)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현장 조사---------- ---. ---------- 현장 조사---------- --.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현장 조사---------- ----------.
제12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생 략)	제12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현장 조사---------- ----------.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현장 조사----------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삭 제 2. ~ 16. (생 략)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 ---------- ---------- ---------- ---------- ---------- ---------- ------ 고려하여 ---------- ---------- ---------- ---------- ----------. ---------- ---------- ---------- ---------- ---------- ---. 2. ~ 16.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① (생 략)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 10. (생 략) ③ (생 략)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3. ---------- 종류별 ------- 4.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3. (생 략) ② (생 략)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 ---------- ---------- ---------- ----. 1. ---------- 종류별 수------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제52조의9(보험료율) ---------- 고려하여 ----------.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① (생 략)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 8. (생 략)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채권의 종류별 ------- 4. ~ 8. (현행과 같음)
제62조(채권 원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62조(채권 원부) ①----------. 1. ---- 종류별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생 략)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에 부칠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 1.·2. (현행과 같음) 3. ----------

부의하는 사항	회의에 부치는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 ---------- ---------- ---------- ---------- ---------- ---------- ---------- ---------- 고려하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경영공시등) ①·② (생략)	제44조(경영공시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 복사---------- ----------. ---------- 복사---------- ----------.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등사·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1. ---------- ---------- ---------- ----------복사----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동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폐지·설치·분할·통합-- 개편·폐지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 ----------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	② ---------- ---------- ---------- ---------- ---------- ----------

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3. ---------- 개편·폐지----------------------------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 폐지·설치·분할·통합---- 개편·폐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31조(겸임수당) ①-- 고려하여 --. ②-- 고려하여 ---------------------. --

겸임기관의장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②(생 략)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5. ---------- 개편·폐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
6.(생 략)	6.(현행과 같음)
④ ~ ⑦(생 략)	④ ~ ⑦(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생 략)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3. ---------- -- 겸하는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 ------. ---------- ---- 개편·폐지 ----------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④----------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이 초과된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01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1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 ---------- ---------- ----------. ---------- ---------- ---------- ---------- ---------- ---------- ----------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6의3. ---------- ---------- ---------- ---------- ---------- ---------- ----------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 ---------- ---------- ----------. ------ ---------- 개정 또는 폐지 ----------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 ---------- ---------- 독(dock)시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3. 독시설 ---------- 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	④ ---------- ---------- ---------- ---------- 지움도장을 찍어야 ---------- ---------- ---------- ---------- ----------

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조광권 등록 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④ --- 지움도장을 찍어야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 ⑨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 ----------. ⑥ ~ ⑨ (현행과 같음)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①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완요구를 하는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적시하여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①---------- ---------- ---------- ---------- ---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라. 접경지역 ----------
마. ~ 하. (생 략)	마. ~ 하.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4. ---------- 외국자본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생 략)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참관하여 ----------.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전석(甎石) 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2. ---------- --------- 벽돌쌓기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 ④ (생 략)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 ---------- ---------- ---------- ---------- ---------- ---------- ----.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1. ---------- ---------- ---------- ---------- 여러 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사무직원의 겸무) (생 략)	제63조(사무직원의 겸임 업무) (현행과 같음)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3. ---------- ---------- 잔액증명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2. ---------- 부잔교(浮棧橋: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 ---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설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 --- 고려하여 ---------- ---------- ---------- ----------.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 수입으로 구분한다.	----------.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기선수수익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생 략)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 접수 도장을 찍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로 한다.	제19조(행위 등의 제한)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 ----------.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종금계정(綜金計定)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팩토링어음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회수하는 어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2. ----------

당하는 대출금	----------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내국수입 유산스(usance)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콜론(call loan)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팩토링채권(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가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나. ~ 커. (생 략)	나. ~ 커.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4. ----------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 ---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구분 시 음용수(飮用水)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 ---------- ---------- ---------- ---------- ---------- -------- 먹는물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 ---------- ---------- ---------- -------.
1.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 --먹는물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 ⑤ (생 략)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⑥ ---------- ---------- ---------- -------.
1. 삭 제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 --먹는물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 ---------- ---------- ----------. ----- ---------- ---------- ---------- ----------.
1. 음용수	1. 먹는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	② ---------- ---------- ---------- ---------- ----------

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먹는물로 ---------- ---------- ---------- ----.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 ----------.
1. 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1. 먹는물의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음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1. 먹는물의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 ---------- ---------- ---------- ---------- ----.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1. ---------- ---------- ---------- -------- 집수정(물저장고)-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부의 간인) ---------- 편철항목---------.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 (생 략)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 이기(移記)----------.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신청서의 접수)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서의 접수) ---------- 여러 개----------.

제46조(편철필증)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편철확인증) ①---------- 편철확인증----------. ②---------- 편철확인증----------.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편철확인증----------.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1개 또는 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여러 개----------. ②------ 여러 개----------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철도시설관리권이 수개인 경우 각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여러 개---------- ---------- ---------- ---------- ---------- 여러 개---------- ---------- ---------- ---------- ----------.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 ---------- ---------- ---------- ---------- ---------- ---------- ---------- -------.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철도시설)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 ---------- 사토장(흙 처리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안전조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30조(안전조치 등) ①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	8. 절토사면(깎기비탈면)·성토사면(쌓기비탈면)----------

는 파손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체신관서현금출납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현금출납---------- ----------.
제2조(적용범위) ①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수불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 ---------- ---------- ---------- 출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불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의 수수) ---------- ---------- ---- 출납상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수불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수불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 ⑤ (생 략)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2. ---------- 잔액증명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② (생 략)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3. ----------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가. ---------- 집수정(물저장고)----------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저장시설(충전소로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8. ----------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총포) 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제3조(총포) ①----------.
1. 총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산업용총	자.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광쇄총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차. ~ 파. (생 략)	차. ~ 파.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 ----------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 ---------- ---------- ---------- --------.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 ---------- ---------- ----------
가. 직경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가. 지름 ---------- ---------- --------
나. 직경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나. 지름 ---------- ---------- ----------
다. 직경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다. 지름 ---------- ---------- ---------- --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조수류(새·짐승) ---------- ---------- ----------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제16조(화약류의 취급)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	제16조(화약류의 취급) ①---------- ---------- ---------- ----------

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화선을 자르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상 충분한 길이로 자르고,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끼울 때에는 뇌관집게를 사용할 것	7. ---------- 정해진 ---------- ---------- ----------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 ~ ③ (생 략)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수불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④---------- ---------- 출납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①----------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	3. ---------- ----------

고, 화약류의 수불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의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 출납량 --------- ------ 천공(구멍 뚫기) ---- ---------- ----------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②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장전기는 장전작업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5. ---------- ---------- 소산(疏散: 분산시킴)----------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제20조(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0조(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갱도의 굴진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4. ---- 굴진(굴 파기)작업--- ----------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직경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5. ---------- ---------- ---------- ----- 지름 ---------- ---------- ---------- ---------- ---------- ---------- -----
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직경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	6. ---------- ---------- ---------- ---------- ---------- ---------- ---------- ---------- ---------- - 지름 ----------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아니하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 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과 천정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환기통(폭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 간격으로 직경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넣어야 한다)을 설치할 것	3. ---------- ---------- ---------- ---------- ---------- ---------- ---------- ---------- 지름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조 및 설비)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개폐기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7. ---------- ---------- ---------- ---------- ---------- 스위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햇빛이 잘 들도록 2개 이상의 창을 설치하되,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에 두고 직경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4. ---------- ---------- ---------- 지름 ---------- ----------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저장소 내부에 조명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개폐기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7. ---------- ---------- ---------- ---------- --------- 스위치----------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원산지규정) 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제5조(원산지규정) ①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포(採捕)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5. ---------- -- 채취·포획---------- ----------. --- ---------- ---------- ---------- ---------- ----------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용 우지(牛脂)	4. ----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豚脂)	5. ---- 돈지(돼지기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 ---------- ----------.
1. 전란액	1. 전란액(알의 모든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첨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
2. 난황분	2. 난황분(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만든 것)
3. 난백분	3. 난백분(알의 흰자를 분말로 만든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

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소 등의 제1 위에 가스가 급성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증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간 중에 교제·회합한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회합의 일시·장소 및 내용	3. --------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 ---------- ---------- 교제·모임의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4조 (위원장) 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① ~ ④ (생 략)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 4. (생 략) ⑥·⑦ (생 략)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재무상태표 2. ~ 4.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 ------- 고려하여 ---------- ---.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	②---------- ------- 고려하여 ---------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 -- 고려하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 ---------- 고려하여 --- ----------.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 ----- 고려하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6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접수·발송----------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수발	4. -------- 접수·발송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38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및 정원) ①·② (생 략)	제38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및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남북협력지구의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8. ---------- 외국자본유치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① (생 략)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고려하여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융거래)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조(금융거래) ① ---------- ---------- ---------- ----------. 1. ---------- ---------- ---------- ---------- ----------보호예수(保護預受: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생 략)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2) (생 략)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생 략) 나. (생 략) 3. ~ 6. (생 략)	2. ---------- 가. ---------- ---------- ---------- ---------- ---------- 1)·2) (현행과 같음) 3) 국외 탈세---------- ---------- -- 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① ---------- ---------- ---------- ---------- ---------- ---------- ---------- ---------- ---------- ---------- ----------. -- ---------- ---팩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② (생 략)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팩스 -------- ---------- ----------. ④ (현행과 같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① (생 략)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1. ----------- 재무상태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7. ---------- 접수·발송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 ⑧ (생 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무상태표----------. ---------- ---------- ---- 재무상태표---------- ----------. ④ ~ ⑧ (현행과 같음)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③ (생 략)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정한 -------- ③ (현행과 같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생략)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임금단가 ---------- 건설임금단가 ---------- 정부임금단가통계에 ------ 정부임금단가 통계도 ----------.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관인관수 3. (생 략)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과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제5조(총무과) ----------. 1. (현행과 같음)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현행과 같음) 4. ---- 접수·발송---------- 5. ~ 9. (현행과 같음)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2. ---------- 추정재무상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1. ---------- 재무상태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1. 추정재무상태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 재무상태표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 (생 략)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 (현행과 같음)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2. ---------- 추정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시달)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 통보-------.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채발행) 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채발행)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사채의 종류별 금액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	2. ----- 재무상태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 출전기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주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2. ---------- --출전마---------- ----------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② (생 략)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③ ---------- 출전---------- ---------- ----------.
제10조(환급금) ① ~ ③ (생 략)	제10조(환급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 출전마--.
제14조(개최운영위원) ① (생　략)	제14조(개최운영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전마----------------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① --.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1. -------------- 출전정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상금의 요구)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재료비・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요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2. -------------- 추정재무상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① (생략) ②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 략) 3. 산업금융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 10. (생 략) ③·④ (생 략)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종류별 ----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 략) 3.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 9. (생 략) ③ (생 략)	제17조(결산) ---------- ---------- --재무상태표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 ---------- ---------- ---------- 종류별 -------- ---------- ---.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종류별 --- ---- 4.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제출) ---------- ---------- ---------- ----------.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 재무상태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2. ---------- 재무상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2. ---------- 재무상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보고) ----------.
1.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 재무상태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생 략)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3. ---- 종류별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7조(사채 원부) ①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1. ------ 종류별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2. ---------- 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 ---------- ---------- ---------- ---------- ---------- ---.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재무상태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① (생략)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 9. (생 략) 제17조(사채원부)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종류별 금액 4.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채원부) ①----------. 1. ---- 종류별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① (생략) ② 공사채 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 략) 3. 공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 10. (생 략)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종류별 금액 4. ~ 10. (현행과 같음)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부의 출연금) 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의 출연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 추정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1. 추정재무상태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 재무상태표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換積)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환적(옮겨 싣기)----------.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2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 략)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요인(要人)경호업무 3. ~ 5. (생 략)	제15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 1. (현행과 같음) 2. ----------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 ~ 5. (현행과 같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불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 1. (현행과 같음) 2. ---------- 후지급으로 ----------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생 략) ② (생 략)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재무상태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①·② (생 략)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試作品) 제작비 등 직접비 3. ~ 5. (생 략) ④ (생 략)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시험제품 ---------- ------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① ---------- ---------- ---------- ---------- ---------- ---------- ----------.
1.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1. ---------- ----------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② (생 략)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를 말한다.	③ ---------- ---------- ---------- ---------- ---------- ---.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안벽(岸壁)·소형선 부두 등 계류시설의 유지 및 보수	1. ----------안벽(부두 벽)----------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도·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지도·감독)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부두의 선석(船席)운영에 관한 사항	3. ---------- --------- 선석(선박을 매어 두는 위치)의 규모--------- -------
3의2. ~ 7. (생 략)	3의2. ~ 7. (현행과 같음)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2. ----------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성명을 적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부의 간인) ---------- 편철한 각 장 사이에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선명령·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음향·수기(手旗)·발광(發光)·기류(旗旒)신호·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선명령·회항명령의 고지) ---------- ---------- ---------- 기류신호(깃발신호)--------- ---------- ---------- ----------.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投索銃) ② (생 략)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 ② (현행과 같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	3. ----------접수·발송----------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국) ①·② (생 략)	제11조(경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어로 경비	3. ---------- 조업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장비기술국) ①·② (생략)	제15조(장비기술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5. 경찰제복 규정 및 의복----------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도(海圖)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水路圖誌)에 해양용도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 ---------- ---------- ---------- ---------- ---------- ---------- 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① (생 략)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 ---------- ---------- ---------- ---------- ---------- ---------- 현지 실제 조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 ⑤ (생 략)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판조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에 가필하는 등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판조서등을 손상시킨 경우	2. ---------- 고쳐 쓰는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의 검사에의 입회)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입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의 검사에의 참관) ---------- 참관할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유휴항만시설) ----------.
1. 안벽(岸壁)	1. 안벽(부두 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2. ----------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치어(稚魚)의 방류 및 종패(種貝)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3. 치어(어린물고기)----- 종패(씨조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1. ---------- 시험제품 ----------
2.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 시험제품 ----------

3. (생 략) ②·③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5. ----------접수·발송----------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생략)	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전국해양레저스포츠 제전에 관한 업무	22. ---------- 행사----------
23. ~ 25. (생 략)	23. ~ 25. (현행과 같음)
26.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민자·외자 유치 및 국제협력	26. ----------외국자본 ----------
27. ~ 87. (생 략)	27. ~ 87.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산정책실) ①·② (생략)	제11조(수산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3. (생 략)	1. ~ 43. (현행과 같음)
44.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 바다숲 및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운영·관리	44. 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
45. ~ 81. (생 략)	45. ~ 81. (현행과 같음)
제14조(항만국) ①·② (생 략)	제14조(항만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항만재개발 관련 민자·외자 유치 및 국제협력	18. ----------외국자본 ----------
19. ~ 25. (생 략)	19. ~ 25. (현행과 같음)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② (생 략)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민자·외자 유치 및 국제협력	3. -------외국자본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육성종(育成種)	2. ---------- 개량 품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역의 수질·저질(底質)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 밑바닥 퇴적물(저질)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 ---------- ---------- ---------- ----------.
1.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1. ---------- 수질오염 방지막--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의견통보 등) ① (생 략)	제67조(의견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 ---------- ---------- ---------- 현지 실제 조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	4. ---------- 외화획득비율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생 략)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차대조표	2. 재무상태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② (생 략)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재무상태표 ---------- ---------- ----------. ④·⑤ (현행과 같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우정청과의 정산·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운송시각의 조정 다. (생 략) 6. ~ 10. (생 략)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나. (생 략)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제회신우표권------- ---------- ---------- ---------- ---------- ---------- 다. (현행과 같음) 6. ~ 10. (현행과 같음) 11.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계

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 사. (생 략) 12. ~ 17. (생 략) ② ~ ④ (생 략)	기별납(요금 표시기에 의한 일괄 요금 별도 납부) --- 라. ~ 사. (현행과 같음) 12.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생 략) 나.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구거(溝渠: 도랑)----- 유지(溜池: 웅덩이)------- ---------- ---------- ---------- ---------- ---------- ----------
다. (생 략) 2.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 ⑦ (생략)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증명 발급 5. ~ 7. (생 략) ⑨ 삭 제 ⑩ (생 략)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각종 증명 ------- 4의2.---------- ---------- ---------- ---------- ---------- 각종 증명 ----- 5. ~ 7.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 ---------- ---------- ---------- -----팩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생 략) ②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 ---------- ----------. ---------- ---------- ---------- ---------- ---------- -----. 1. ---------- ---------- 여러 개---------- ------- 2. (현행과 같음) ② ---------- ---------- 여러 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 ---------- ---------- --------- 고려하여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 ---------- ---------- 고려하여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정관) ① (생 략)	제8조(의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②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9. ---- 직접 수여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자치분권실) ①·② (생 략)	제14조(지방자치분권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36.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6. ---------- 폐지·설치·분할·통합---------- -
37. ~ 84. (생 략)	37. ~ 84.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생 략)	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소산(疏散)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10. 소산(疏散: 분산시킴) ----------
제34조(기록정책부) ① (생 략)	제34조(기록정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1. ----------접수·발송---------
2. ~ 22. (생 략)	2. ~ 22. (현행과 같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서의 분류·수발	6. ----------접수·발송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 14. (생 략)	제3조(정의) ----------. 1. ~ 8. (현행과 같음) 9. ----------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10. ~ 14. (현행과 같음)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표시 방법 가. (생 략) 나. 종이문서인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32조(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병기(倂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 함께 적어 ----------.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② ~ ⑤ (현행과 같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①·② (생 략)	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되는 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부적절한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본직기관이 지급하고, 겸직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고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생 략)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총공급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생 략)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② ---------- 총공급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생 략)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재무상태표----------.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② ----------.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1. ---------- 지도활동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 (생 략)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檢案書) 2.·3. (생 략)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1. ---------- 시신 검사의견서 2.·3. (현행과 같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시험 과목) ---------- ---------- ----------.
1. 제1차시험	1. -------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 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 ---------- ---------- ---------- ----------화재의 성질·상태---------- ---------- ----------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라. ------ 성질·상태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전·이관 등 기록관 운영	5. ----------접수·발송----------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1조(물환경정책국) ①·② (생략)	제11조(물환경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 침전물(슬러지) ----------
제12조(수자원정책국) ①·② (생략)	제12조(수자원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15. 해수민물화----------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① (생 략)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12. ------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부분) ----------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